

www.i-sh.co.kr

#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2016. 04 . 29



서울특별시  
**이치** 에스에이치공사

## 차 례

---

1	공급현황	04
2	신청자격	09
3	입주자 선정	13
4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19
5	신청접수일정	23
6	청약신청 및 심사서류 제출안내	24
7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26
8	동호추첨 및 당첨자 발표	28
9	계약일시 및 구비서류	29
10	유의사항	30
11	임대신청 문의	31
12	건본주택 및 현장안내	31



## ● 일반공급 2순위, 고령자주택(만60세이상 만65세미만)

- 청약신청 접수일 : 2016.05.18.(수)
- 접수장소 : SH공사 2층 대강당
- 수서동721-1 장기전세주택(35㎡,45㎡) : 송파구, 서초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에 거주하는 자(가구당 월평균소득이 70% 이하)
- 등촌동661-6 장기전세주택(49㎡) : 양천구, 마포구,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자(가구당 월평균소득이 70% 이하)

## ● 일반공급 3순위

- 청약신청 접수일 : 2016.05.19.(목)
- 접수장소 : SH공사 1층 공공임대부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수서동, 등촌동 장기전세주택(50㎡ 미만)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70% 이하자로서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수서동, 등촌동 장기전세주택(50㎡ 미만)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70% 초과~100% 이하자로서 서울특별시 거주자

# 1

## 공급현황



※ 금회 단독세대주 신청가능 단지 : 등촌동661-6 장기전세주택 49㎡, 수서동721-1 장기전세주택 35㎡

단지명 (위 치)	신청 유형 (전용)	공급호수				전세금액(천원)			세대당 계약면적(㎡)				난방 방식	입주 (예정)
		계	일반공급		우선 / 특별 공급	계	계약금 (계약시 20%)	잔금 (입주시 80%)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일 반	고 령 자										
계		935	411	5	519									
금천롯데캐슬 골드파크1차 (금천구 독산동) 군부대 특별계획	59㎡	154	48	-	106	260,000	52,000	208,000	59.94	22.17	34.90	117.01	개별 난방	'16.11
	71㎡ (72㎡)	4	4	-	-	284,000	56,800	227,200	71.39	27.05	41.56	140.00	개별 난방	'16.11
		1	1	-	-	284,000	56,800	227,200	72.52	25.45	42.22	140.19	개별 난방	'16.11
	84㎡	24	21	-	3	312,000	62,400	249,600	84.81	30.56	49.38	164.75	개별	'16.11

단지명 (위 치)	신청 유형 (전용)	공급호수				전세금액(천원)			세대당 계약면적(㎡)				난방 방식	입주 (예정)
		계	일반공급		우선 / 특별 공급	계	계약금 (계약시) 20%	잔금 (입주시) 80%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일 반	고 령 자										
상도두산위브 트레지움 (동작구 상도동) 상도동 169-5	59㎡	96	32	-	64	328,000	65,600	262,400	59.79	23.65	35.22	118.66	개별 난방	'16.08
	84㎡	64	49	-	15	392,000	78,400	313,600	84.86	32.61	49.99	167.46	개별 난방	'16.08
신대림2차 신동아 파밀리에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1	59㎡	14	6	-	8	226,400	45,280	181,120	59.95	19.32	44.21	123.48	개별 난방	'16.08
래미안 신반포팰리스 (서초구 잠원동) 잠원대림	59㎡	81	25	-	56	624,800	124,960	499,840	59.99	26.69	37.40	124.09	지역 난방	'16.08
마곡힐스테이트 (강서구 마곡동)긴들마을	59㎡	59	22	-	37	292,000	58,400	233,600	59.99	21.79	41.32	123.10	지역 난방	'16.08
아크로리버파크 반포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	59㎡	85	28	-	57	676,000	135,200	540,800	59.97	20.25	53.40	133.62	지역 난방	'16.09
고덕래미안 힐스테이트 (강동구 고덕동) 고덕시영	59㎡	211	66	-	145	372,000	74,400	297,600	59.23	23.34	56.61	139.18	지역 난방	'17.02
올림픽파크 한양수자인 (강동구 성내동) 성내 미주	59㎡	43	15	-	28	292,000	58,400	233,600	59.55	23.45	35.44	118.44	개별 난방	'16.08
강일지구 (강동구 강일동)	59㎡	11	11	-	-	144,030	28,806	115,224	59.87	21.76	24.14	105.77	지역 난방	'16.09
	84㎡	3	3	-	-	292,000	58,400	233,600	84.83	28.21	30.48	140.52	지역 난방	'16.09
내곡1 (서초구 내곡동)	59㎡	2	2	-	-	315,000	63,000	252,000	59.94	20.76	41.56	122.26	개별 난방	'16.09
등촌동 661-6 (강서구 등촌동)	49㎡	9	9	-	-	133,700	26,740	106,960	49.79	25.98	54.97	130.74	지역 난방	'16.09
마곡지구 7단지 (강서구 마곡동)	84㎡	1	1	-	-	324,000	64,800	259,200	84.79	24.49	54.67	163.95	지역 난방	'16.09
마곡지구 14단지 (강서구 마곡동)	59㎡	1	1	-	-	264,000	52,800	211,200	59.79	22.13	42.74	124.66	지역 난방	'16.09

단지명 (위 치)	신청 유형 (전용)	공급호수				전세금액(천원)			세대당 계약면적(㎡)				난방 방식	입주 (예정)
		계	일반공급		우선 / 특별 공급	계	계약금 (계약시) 20%	잔금 (입주시) 80%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일 반	고 령 자										
마곡지구 14단지 (강서구 마곡동)	84㎡	1	1	-	-	316,000	63,200	252,800	84.92	29.46	60.70	175.08	지역 난방	'16.09
발산지구 4단지 (강서구 발산동)	59㎡	7	7	-	-	135,350	27,070	108,280	59.76	19.58	26.36	105.70	지역 난방	'16.09
상계장암 1 (의정부시 장암동)	84㎡	1	1	-	-	232,000	46,400	185,600	84.81	28.06	37.53	150.40	지역 난방	'16.09
세곡2-3 (강남구 자곡동)	59㎡	2	2	-	-	311,250	62,250	249,000	59.97	25.10	36.64	121.71	개별 난방	'16.09
세곡2-8 (강남구 율현동)	59㎡	1	1	-	-	311,250	62,250	249,000	59.97	23.18	53.55	136.70	개별 난방	'16.09
세곡리엔파크 1 (강남구 세곡동)	59㎡	1	1	-	-	137,850	27,570	110,280	59.97	22.47	72.26	129.41	개별 난방	'16.09
세곡리엔파크 3 (강남구 세곡동)	59㎡	1	1	-	-	168,460	33,692	134,768	59.97	23.47	45.97	129.41	개별 난방	'16.09
세곡리엔파크 4 (강남구 세곡동)	59㎡	1	-	1	-	148,420	29,684	118,736	59.84	23.85	44.99	128.68	개별 난방	'16.09
송파파크데일 2단지 (송파구 마천동)	59㎡	1	-	1	-	142,850	28,570	114,280	59.91	19.44	36.32	115.67	개별 난방	'16.09
수서동 721-1 (강남구 수서동)	35㎡	9	9	-	-	164,000	32,800	131,200	35.37	18.81	22.12	76.30	지역 난방	'16.09
	45㎡	2	2	-	-	204,000	40,800	163,200	45.01	23.50	28.16	96.67	지역 난방	'16.09
신내3지구 1단지 (중랑구 신내동)	59㎡	2	2	-	-	127,030	25,406	101,624	59.60	25.55	36.24	121.39	개별 난방	'16.09
신내3지구 2단지 (중랑구 신내동)	59㎡	2	2	-	-	141,770	28,354	113,416	59.66	23.36	36.90	119.92	개별 난방	'16.09
신내데시앙 (중랑구 신내동)	59㎡	1	-	1	-	139,710	27,942	111,768	59.99	21.74	23.15	104.88	지역 난방	'16.09
	84㎡	2	2	-	-	260,000	52,000	208,000	84.81	22.11	32.73	139.65	지역 난방	'16.09
신정이편하우스 2단지 (양천구 신정동)	59㎡	1	1	-	-	137,530	27,506	110,024	59.88	20.06	40.81	120.75	지역 난방	'16.09

단지명 (위 치)	신청 유형 (전용)	공급호수				전세금액(천원)			세대당 계약면적(㎡)				난방 방식	입주 (예정)
		계	일반공급		우선 / 특별 공급	계	계약금 (계약시) 20%	잔금 (입주시) 80%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일 반	고 령 자										
신정이펜하우스 3단지 (양천구 신정동)	59㎡	3	3	-	-	137,530	27,506	110,024	59.88	23.38	43.95	127.21	지역 난방	'16.09
신정이펜하우스 5단지 (양천구 신정동)	59㎡	2	1	1	-	137,530	27,506	110,024	59.88	19.06	43.06	122.00	지역 난방	'16.09
은평2-3 (은평구 진관동)	59㎡	2	2	-	-	156,750	31,350	125,400	84.04	21.91	72.26	140.24	지역 난방	'16.09
은평3-3 (은평구 진관동)	84㎡	7	7	-	-	308,000	61,600	246,400	84.98	23.07	72.26	146.32	지역 난방	'16.09
은평3-10 (은평구 진관동)	84㎡	2	2	-	-	308,000	61,600	246,400	84.78	29.73	46.53	161.04	지역 난방	'16.09
은평3-12 기자촌 (은평구 진관동)	84㎡	1	1	-	-	308,000	61,600	246,400	84.94	27.59	55.18	167.71	지역 난방	'16.09
장지 1 (송파구 장지동)	84㎡	2	2	-	-	344,000	68,800	275,200	84.94	21.71	37.16	143.81	개별 난방	'16.09
장지 4 (송파구 장지동)	59㎡	1	1	-	-	155,240	31,048	124,192	59.67	17.61	27.74	105.02	개별 난방	'16.09
천왕2-2 (구로구 천왕동)	59㎡	1		1	-	137,170	27,434	109,736	59.97	19.82	40.01	119.80	개별 난방	'16.09
천왕이펜하우스 1 (구로구 천왕동)	59㎡	2	2	-	-	159,240	31,848	127,392	59.95	25.13	47.97	133.05	개별 난방	'16.09
천왕이펜하우스 3 (구로구 천왕동)	59㎡	2	2	-	-	144,290	28,858	115,432	59.95	21.11	41.16	122.22	개별 난방	'16.09
래미안그레이트 2차 (강남구 역삼동)	59㎡	1	1	-	-	502,500	100,500	402,000	59.78	26.22	31.94	117.94	개별 난방	'16.09
래미안서초스위트 (서초구 서초동)	59㎡	1	1	-	-	536,250	107,250	429,000	59.96	20.10	39.86	106.15	지역 난방	'16.09
반포자이 (서초구 반포동)	59㎡	6	6	-	-	624,800	124,960	499,840	59.89	27.57	38.98	126.44	지역 난방	'16.09
서울숲아이파크 (성동구 송정동)	64㎡	1	1	-	-	208,000	41,600	166,400	64.21	20.15	43.09	127.45	개별 난방	'16.09
서초교대 이편한세상 (서초구 서초동)	59㎡	1	1	-	-	536,250	107,250	429,000	59.90	21.57	49.96	127.43	지역 난방	'16.09

단지명 (위 치)	신청 유형 (전용)	공급호수				전세금액(천원)			세대당 계약면적(㎡)				난방 방식	입주 (예정)
		계	일반공급		우선 / 특별 공급	계	계약금 (계약시) 20%	잔금 (입주시) 80%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일 반	고 령 자										
송파래미안파인탑 (송파구 송파동)	53㎡	1	1	-	-	384,000	76,800	307,200	53.36	21.95	40.51	115.82	지역 난방	'16.09
수명산롯데캐슬 (양천구 신월동)	59㎡	1	1	-	-	176,000	35,200	140,800	59.98	16.82	29.62	106.42	개별 난방	'16.09

- ※ 위 표상 강일지구 이하는 잔여공가로서 공가 또는 재공급단지이며, 래미안그레이트2차 이하는 잔여공가로서 매입형단지임.
- ※ 주택구조는 모든 단지 철근콘크리트 벽식 또는 라멘조 구조이며 단지별 최고층수 및 평형별 해당동, 평면, (복층)구조 등은 단지별 (홈페이지)팸플릿을 참조하시기 바람
-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저층(1~3층)에도 배정될 수 있음.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소음,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소음, 저층배정 등을 사유로 동호변경 등은 불가하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동호교환도 불가함.**
- 1세대(본인+배우자+세대원) 1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 위 주택면적은 동일 단지 내 일반적인 1개 타입의 면적으로 각 타입별로 세부면적은 상이하며 **단지별로 타입 구분없이 신청접수하여 전산추첨으로 세부타입 결정 및 동호배정되고, 동일단지내 타입별 면적 등은 상이하나 전세금액은 동일함.**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면적임.
- 위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통보함.**
- 공급세대수에서 우선/특별공급은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우선공급대상자에게 배정되는 세대수임.
- 입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발코니새시가 설치된 세대의 경우 발코니창, 콘크리트 난간,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차이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특히, 빨래건조, 가슴기 등 사용시에는 수시로 새시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시켜 결로를 예방하여야 함.
- **고령자주택 일반공급**은 1~2층에 고령자에게 편리한 시설을 갖춘 임대주택으로 건립되어 있음.
- 고령자주택은 고령자에게 편리한 시설(욕실 미닫이문, 욕실 및 현관 단차 등)을 갖춘 고령자용 임대주택으로 건립됨.
- 고령자주택의 편의시설 설치유무는 지구, 단지, 주택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잔여공가**는 기존 입주자의 퇴거, 미계약 등으로 발생된 공가를 재공급하는 것으로 도배, 장판 등 일부 마감재의 파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파손부분은 공사에서 교체하나 각 마감재 전체의 교체를 원할 경우에는 입주자 본인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함. 공가 현황은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 전까지 해당주택에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음.

- 아울러,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고 별도의 유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공급단지별, 해당동호별로 인근에 위치한 철도, 도로, 유희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 인근 혐오시설에 의한 악취, 분진 등의 불편사항이 입주후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단지별로 내외부 환경(생활여건)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후 청약 바라며**, 당해 택지조성사업 준공이전에는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각급 학교 개교시기는 입주시기보다 늦어질 수 있으니 학교배정, 개교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입주에 불편이 없도록 유의 바람.
- 신규단지 기타 유의사항은 SH공사에서 배부하는 공고안내문이나 SH공사 홈페이지를 꼭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에 표시된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 기준임.
- 향후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급세대수, 공급면적, 공급타입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2

## 신청자격



### 가. 공통사항

입주자 모집공고일(2016.04.29.)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유형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동일 무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신청하거나 2세대 이상의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중복될 경우 모두 무효처리됨. 단, 신혼부부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에 별도 청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동시에 당첨될 경우 특별공급에 대한 당첨만을 인정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안내

무주택세대구성원은 1)주택공급신청자가 될 수 있는 대상자 범위 및 2)그 공급신청자의 세대가 무주택임을 확인하여야하는 대상자 범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 1) 주택공급신청자가 될 수 있는 대상자 :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중 1인이 가능
-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세대주의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시부, 시모, 장인, 장모, 친척, 지인 등 동거인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일반 및 우선공급 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가 무주택임을 확인하여야하는 대상자 범위**

-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전원 (공급신청자 포함)
-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 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해당세대)을 대상으로 합니다.
- ※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 및 가점을 신청한 경우 위 범위에 속하지 않는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공급신청자 중 단독세대주(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본인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의 주택만 신청가능함.**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이 ①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 예외로 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시 해당 구에 공급되는 주택 중 전용면적 40㎡이하의 주택이 없는 경우와「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장애등급 2급이상 및 국가유공자 3급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장애등급 3급 중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심장장애인·호흡기 장애인·간질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에는 단독세대주라도 **전용면적 50㎡미만의 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시 『저층(1,2층) 배정』을 희망(신청)하면 공급 가능한 세대수 범위내에서 저층(1,2층)으로 동호배정하되 신청자가 공급세대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 전산추첨하고, 탈락자는 저층 미신청자와 동일하게 동호배정(고령자 주택 및 주거약자 주택 신청자 제외)하며, 저층(1~2층) 희망자가 배정세대에 미달할 경우 저층 미신청자도 저층에 배정(※ 당첨자중에서 저층배정되므로 당첨여부와는 관계없음)**

**나. 전용59㎡형 :** 강일지구, 발산4, 세곡리엔파크1,3,4, 송파파크데일 2, 신내3-1, 신내3-2, 신내데시앙, 신정이펜하우스2,3,5, 은평2-3, 장지4, 천왕 2-2, 천왕이펜하우스1,3

입주자 모집공고일(2016.04.29)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 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가구원수	3인이하가구	4인가구	5인이상 가구
	월소득기준	3,371,665원이하	3,775,207원이하	3,832,782원이하
소 득	소득산정 기준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b>이 경우 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태아수 확인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b> ○ 월평균소득은 위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별 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확인하는 소득으로서 근로소득(상시·일용·자활·공공),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기타),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을 말함. ※ 소득항목별 조사항목은 공고문 후단 별표1 참조 ※ 위 가구원(세대원) 기준은 이하 부동산 등 자산보유 기준에도 동일하게 적용		

부동산	<p>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b>12,600만원 이하</b>  <b>&lt; 건축물가액 : 공시가격, 토지가액 : 소유면적×공시지가 &gt;</b> ☞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p> <p>① 공시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장 제2절에 따른 가격. 다만,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p> <p>② 토지가액(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토지가액을 포함)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p> <p>※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가액(건물 및 토지가액) 포함.</p>
자동차	<p>현재가치 기준 <b>2,465만원 이하</b>[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단, <b>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차량 보유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중 높은 가액기준으로 산정</b>.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p> <p>※ 자동차(「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p> <p>※ 동일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p>

**다. 전용35㎡형 : 수서동 721-1**

**전용45㎡형 : 수서동 721-1**

**전용49㎡형 : 등촌동 661-6**

**전용59㎡형 : 내곡1, 마곡14, 세곡2-3, 세곡2-8**

입주자 모집공고일(2016.04.29)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3인이하가구	4인가구	5인이상 가구
	월소득기준	4,816,665원이하	5,393,154원이하	5,475,403원이하
	소득산정 기준	기타 세부내용은 위 “2. 신청자격중 나항”의 전용59㎡형 소득산정 기준 참조		
부동산	<p>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b>12,600만원 이하</b>  <b>&lt; 건축물가액 : 공시가격, 토지가액 : 소유면적×공시지가 &gt;</b> ☞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p> <p>※ 부동산소유 기준관련 기타 세부내용은 “2. 신청자격중 나항”의 전용59㎡형 부동산소유 기준 참조</p>			

자동차	<p>현재가치 기준 2,465만원 이하[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p> <p>※ 자동차소유 기준관련 기타 세부내용은 “2. 신청자격중 나항”의 전용59㎡형 자동차소유 기준 참조</p>
-----	--

**라. 전용 84㎡형 :** 강일지구, 마곡7,14, 상계장암1, 신내데시앙, 은평3-3, 10, 12, 장지1

입주자 모집공고일(2016.04.29)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상계장암지구는 서울특별시 또는 의정부시 거주자 포함(이 경우 거주기간은 서울시와 의정부시를 동일지역으로 간주함.)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3인이하가구	4인가구	5인이상 가구
	월소득기준	5,779,998원이하	6,471,784원이하	6,570,483원이하
	소득산정 기준	기타 세부내용은 위 “2. 신청자격중 나항”의 전용59㎡형 소득산정 기준 참조		
부동산	<p>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lt; 건축물가액 : 공시가격, 토지가액 : 소유면적×공시지가 &gt; ※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 부동산소유기준관련 기타 세부내용은 “2. 신청자격중 나항”의 전용59㎡형 부동산소유 기준 참조</p>			

**마. 재건축/역세권 매입 전용60㎡이하형 :** 금천롯데캐슬 골드파크1차(59㎡),

상도두산위브트레지움(59㎡), 신대림2차 신동아파밀리에(59㎡), 래미안신반포팰리스(59㎡),  
 마곡힐스테이트(59㎡), 아크로리버파크반포(59㎡),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59㎡),  
 올림픽파크한양수자인(59㎡) 래미안그레이튼2차(59㎡), 래미안서초스위트(59㎡),  
 반포자이(59㎡), 서초교대이편한세상(59㎡), 송파래미안파인탑(53㎡), 수명산롯데캐슬(59㎡)

입주자 모집공고일(2016.04.29)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3인이하가구	4인가구	5인이상 가구
	월소득기준	4,816,665원이하	5,393,154원이하	5,475,403원이하
	소득산정 기준	기타 세부내용은 위 “2. 신청자격중 나항”의 전용59㎡형 소득산정 기준 참조		
부동산	<p>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lt; 건축물가액 : 공시가격, 토지가액 : 소유면적×공시지가 &gt; ※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 부동산 소유기준관련 기타 세부내용은 “2. 신청자격중 나항”의 전용59㎡형 부동산소유 기준 참조</p>			
자동차	<p>현재가치 기준 2,465만원 이하[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p> <p>※ 자동차 소유기준관련 기타 세부내용은 “2. 신청자격중 나항”의 전용59㎡형 자동차소유 기준 참조</p>			

## 바. 재건축/역세권 매입형 전용60㎡초과형 :

금천롯데캐슬 골드파크1차(71㎡,72㎡,84㎡), 상도두산위브트레지움(84㎡), 서울숲아이파크(64㎡)

입주자 모집공고일(2016.04.29)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 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60㎡초과 85㎡이하 주택	가구원수	3인이하가구	4인가구	5인이상 가구
		월소득기준	5,779,998원이하	6,471,784원이하	6,570,483원이하
		소득산정 기준	기타 세부내용은 위 "2. 신청자격중 나항"의 전용59㎡형 소득산정 기준 참조		
부동산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 건축물가액 : 공시가격, 토지가액 : 소유면적×공시지가 > ※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 부동산소유기준관련 기타 세부내용은 "2. 신청자격중 나항"의 전용59㎡형 부동산소유 기준 참조				

### 3

## 입주자 선정



아래 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가입형태(본인선택)에 따라 해당주택에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청약전에 해당 입주자 저축가입은행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결제원에서 운영중인 인터넷 홈페이지(www.ap2you.com, 다만, 국민은행가입자는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에서 순위확인서 발급 가능]

## ※ 주택관리번호 : 2016000440

### 가. 일반공급(일반주택)

아파트명	입주자 선정 방법			
전용 35㎡형, 45㎡형 : 수서동 721-1 전용 49㎡형 : 등촌동661-6	① 본인과 세대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초과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가구원수	3인이하가구	4인가구	5인이상 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3,371,665원이하	3,775,207원이하	3,832,782원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4,816,665원이하	5,393,154원이하	5,475,403원이하
	② 위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 수서동 721-1(35,45㎡) : 강남구에 거주하는 자				
- 등촌동 661-6(49㎡) : 강서구에 거주하는 자				

아파트명	입주자 선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서동 721-1(35,45㎡) : 송파구, 서초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에 거주하는 자</li> <li>- 등촌동 661-6(49㎡) : 양천구, 마포구,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자</li> </ul> </li> <li>○ 3순위 : 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해당 입주자격은 충족해야 함)</li> <li>※ ②항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의 “4.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중 나항”에 의함</li> </ul>												
<p>• 전용59㎡형 (내곡1, 마곡14, 세곡2-3, 세곡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자</li> <li>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자</li> <li>③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li> <li>※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본인과 세대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초과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함</li> </ul> <table border="1" data-bbox="395 891 1461 1093"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h>가구원수</th> <th>3인이하가구</th> <th>4인가구</th> <th>5인이상 가구</th> </tr> </thead> <tbody> <tr> <td>가구당 월평균소득 70%</td> <td>3,371,665원이하</td> <td>3,775,207원이하</td> <td>3,832,782원이하</td> </tr> <tr> <td>가구당 월평균소득 100%</td> <td>4,816,665원이하</td> <td>5,393,154원이하</td> <td>5,475,403원이하</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소득범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4.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중 나항”에 의함</li> </ul>	가구원수	3인이하가구	4인가구	5인이상 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3,371,665원이하	3,775,207원이하	3,832,782원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4,816,665원이하	5,393,154원이하	5,475,403원이하
가구원수	3인이하가구	4인가구	5인이상 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3,371,665원이하	3,775,207원이하	3,832,782원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4,816,665원이하	5,393,154원이하	5,475,403원이하										
<p>• 전용59㎡형 (강일지구, 발산4, 세곡리엔파크1,3, 신내3-1, 신내3-2, 신정이펜하우스2,3,5, 은평2-3, 장지4, 천왕이펜하우스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자</li> <li>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자</li> <li>③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li> <li>※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선정은 다음의 “4.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중 가항”에 의함</li> </ul>												
<p>• 전용84㎡형 (강일지구, 마곡7,14, 상계장암1, 신내데시앙, 은평3- 3,10,12, 장지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자</li> <li>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자</li> <li>③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li> <li>※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선정은 다음의 “4.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중 나항”에 의함</li> </ul>												



<b>신청자가 공급세대수 초과시 입주자 선정</b>	<p>④ 사회 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 2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및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 1점</p> <p>⑤ 장애인(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동일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원에 한함) 전원 해당) - 제2급 이상 : 2점, - 제3급 이하 : 1점</p> <p>※ 부양가족수, 서울특별시 연속 거주기간,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4.동일순위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과 동일함.</p>
--	---

**다. 재건축/역세권 매입형 우선/특별공급 (전용59㎡형 : 금천롯데캐슬 골드파크1차, 상도두산위브트레지움, 신대림2차신동아파밀리에, 래미안신반포팰리스, 마곡힐스테이트, 아크로리버파크반포,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올림픽파크한양수자인)**  
**(전용84㎡형 : 금천롯데캐슬 골드파크1차, 상도두산위브트레지움)**

구분	입주자 선정 방법														
<b>우 선 공 급</b>	<b>3자녀이상가구 (전용85㎡이하)</b>	주택의 신청규모별로 위 “2. 신청자격 중 마,바항”을 충족하는 자로서 민법상 미성년(만19세 미만 - 1997.04.30 이후 출생)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하되, 태아수 확인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가 있는 자(이·재혼시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자(현 배우자포함)와 동일한 「가족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인정)													
	<b>노부모부양자</b>	위 “2. 신청자격 중 마,바항”을 충족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부양여부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하고, 신청자가 세대주일 경우에만 해당됨) ※ 피부양자(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도 무주택이어야 함.													
	<b>국가유공자등</b>	위 “2. 신청자격 중 마,바항”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에서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한 자 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③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④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b>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자 (전용60㎡이하)</b>	위 “2. 신청자격 중 마항”을 충족하는 자로서 다음의 월평균소득기준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가구원수</th> <th>3인이하가구</th> <th>4인가구</th> <th>5인이상 가구</th> </tr> </thead> <tbody> <tr> <td>월평균소득기준</td> <td>3,371,665원이하</td> <td>3,775,207원이하</td> <td>3,832,782원이하</td> </tr> <tr> <td>소득산정 기준</td> <td colspan="3">기타 세부내용은 위 “2. 신청자격중 나항”의 전용59㎡형 소득산정 기준 참조</td> </tr> </tbody> </table>			가구원수	3인이하가구	4인가구	5인이상 가구	월평균소득기준	3,371,665원이하	3,775,207원이하	3,832,782원이하	소득산정 기준	기타 세부내용은 위 “2. 신청자격중 나항”의 전용59㎡형 소득산정 기준 참조	
가구원수	3인이하가구	4인가구	5인이상 가구												
월평균소득기준	3,371,665원이하	3,775,207원이하	3,832,782원이하												
소득산정 기준	기타 세부내용은 위 “2. 신청자격중 나항”의 전용59㎡형 소득산정 기준 참조														

구분	입주자 선정 방법								
신혼부부 특별공급	<p><b>위 “2. 신청자격 중 마항”을 충족하는 자</b>(다만,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적용하되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고, <b>입주자 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청약예금(300만원이상),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약정납입일에 납입)이 경과한 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함(재혼 포함). 다만, 소득기준 심사시 임신중인 자녀는 세대원에 포함.</li> <li>-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이후 출생신고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관계 인정)로 판단하며,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이 적용됨</li> <li>- 임신중인 경우는 <b>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 가능한 임신진단서</b>(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임신진단서 발급받아 제출)로 청약자격 여부 확인(※임신주수 기재된 진단서 제출하되 태아수 확인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li> <li>- 재혼한 경우에는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li> </ul> <p>※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p> <table border="1" data-bbox="405 958 1469 1055"> <thead> <tr> <th>가구원수</th> <th>3인이하가구</th> <th>4인가구</th> <th>5인이상 가구</th> </tr> </thead> <tbody> <tr> <td>월평균소득기준</td> <td>5,779,998원이하</td> <td>6,471,784원이하</td> <td>6,570,483원이하</td> </tr> </tbody> </table>	가구원수	3인이하가구	4인가구	5인이상 가구	월평균소득기준	5,779,998원이하	6,471,784원이하	6,570,483원이하
	가구원수	3인이하가구	4인가구	5인이상 가구					
월평균소득기준	5,779,998원이하	6,471,784원이하	6,570,483원이하						
<p>아래 순위에 따라 공급함.</p> <p>①제1순위 :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자를 포함하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한다)하여 자녀가 2명이상 있는 자</p> <p>②제2순위 :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자를 포함하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자</p>									
동일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p>동일순위내 경쟁시 아래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p> <p>①미성년 자녀 수(태아 포함)가 많은 자</p> <p>※ 재혼시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자(현 배우자포함)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이 함께 된 경우만 인정</p> <p>② 미성년 자녀 수(태아 포함)가 동일할 경우 신청(청약)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낮은 순으로 선정하되, 연령이 같은 경우 전산추첨으로 입주자 선정</p>								
입주시 유의사항	<p>임대주택 공급계약체결이후 신혼부부 <b>특별공급</b> 당첨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또는 임신유지) 및 입양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b>불법 낙태, 입주 전 파양 등인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부부의 경우 출산증명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 유산·낙태관련 진단서(임신주수 기재분)</li> <li>-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li> </ul>								

※ 우선공급에 따른 동일순위 경쟁시에는 다음의 “4.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중 나항”에 따라 선정하며, **특별공급신청자가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되지 않음.**

## \* 우선공급 배정세대

### ▶ 서울시 매입 재건축/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단지명	유형 (전용)	계	우선공급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자	3자녀 이상가구	국가 유공자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자	신혼부부
합 계		519	36	120	36	219	108
금천롯데캐슬 골드파크1차	59㎡	106	7	23	7	46	23
	84㎡	3	-	3	-	-	-
상도두산위브트레지움	59㎡	64	4	14	4	28	14
	84㎡	15	3	9	3	-	-
신대림2차 신동아파밀리에	59㎡	8	-	2	-	4	2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56	4	12	4	24	12
마곡힐스테이트	59㎡	37	2	8	2	17	8
아크로리버파크반포	59㎡	57	4	12	4	25	12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59㎡	145	10	31	10	63	31
올림픽파크한양수자인	59㎡	28	2	6	2	12	6

- 우선공급 신청자가 배정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8호에 의한 순위 및 배점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다만,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처 등에서 선정하여 통보한 순위에 의하되, 별도로 SH공사에 청약신청하여야 하며 기타 우선공급대상자는 해당 우선공급항목을 체크하여 청약신청하여야 함. 이 경우에도 단독세대주는 50㎡이상 주택형 신청 불가).
- 특별공급신청자가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되지 않음. 다만, 특별공급신청자는 일반공급(우선공급, 특별공급 제외)에 별도로 청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동시에 당첨된 경우 특별공급에 대한 당첨만을 인정함.
- 우선(특별)공급 신청미달로 인한 잔여세대는 일반공급(고령자주택 제외) 대상으로 전환됨



**가. 전용59㎡형** : 강일지구, 발산4, 세곡리엔파크1,3, 신내3-1, 신내3-2, 신정이펜하우스2,3,5, 은평2-3, 장지4, 천왕이펜하우스1,3

1) 일반공급의 경우 제1~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태아 포함) 3명 이상을 둔 신청자 중 미성년인 자녀 수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자녀수가 같거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와 우선공급의 경우 아래의 2)호 및 3)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한 사유로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으며,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전산추첨에 의함.

## 2) 가점기준

구분	3점	2점	1점
① 공급신청자 나이	50세이상	40세이상 50세미만	30세이상 40세미만
② 공급신청자 부양가족수 (태아의 수 포함, 공급신청자 제외) ※ 하단 부양가족 설명 참조, 직계존속은 신청자가 세대주일 경우에만 포함	3인이상	2인	1인
③ 서울특별시 연속 거주기간(만19세이후)	5년이상	3년이상 5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④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 3점 ※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일 경우에만 가산되며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도 무주택이어야함.			
⑤ 미성년(만19세미만)자녀(태아의 수 포함)의 수	3자녀이상	2자녀	-
⑥ 공급신청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납입 횟수	60회이상	48회이상 60회미만	36회이상 48회미만
⑦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⑧ 사회취약계층 : 3점 ( 세부내용은 다음의 ※표 사회취약계층 가점내용 참조 )			
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중 1년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된 자 : 3점			

### ※ 사회취약계층 가점내용(아래 항목중 1개 항목만 인정)

#### 가. 다음에 각호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5.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6. 1 내지 3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서울시장의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자 및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동일주민등록표 등본상 등재된 세대원에 한함) 전원 해당)

다.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중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 부양가족수 : ①공급신청자를 제외한 무주택세대구성원(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포함됨.) ②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신청자의 형제자매(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형제자매는 만19세 미만('97.04.30이후 출생자) 또는 만60세 이상('56.04.29이전 출생자)인 자에 한함) ③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공급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포함됨.) ④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는 태아
-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인 세대원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일치하는 배우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그 외 직계존비속 등은 부양가족 및 미성년자로 인정되지 않음.
- ※ 서울특별시 연속 거주기간은 성년(만19세)이후부터 기산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서울시 최종 전입일부터 기산)하여 서울시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거주불명등록 등)된 경우 말소이후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
- ※ 미성년(만19세미만)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의거 산정. 다만, 이(재)혼인 등의 경우 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신청자(현 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
- ※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의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고 해당기간을 계속하여 부양해야하며,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가산되고,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도 무주택이어야함.
- ※ 중소기업중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제조업 확인은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의 제조업으로 확인하며, 2개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 기준(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종된 사업장은 제외).
- ※ 영구임대주택 거주 및 계약 여부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서로 판단함.
- ※ **유의사항(중요함)**

임신중인 자녀(입양포함)를 부양가족, 미성년자녀로 인정받아 당첨(예비자포함)된 자는 입주시까지 출산(또는 임신유지) 및 입양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 등인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됨.(입증자료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에 한함)

**3) 감점 산정기준 : 2009.11.30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의거 장기전세주택을 계약한 자에 해당함.**

감 점 기 준	감점 점수
1.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10점
2.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8점
3. 1호 내지 2호 이외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6점

- ※ 신청자 및 배우자(분리 배우자 포함)가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관계법령에 의한 임차권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인 포함)에 한하며, 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감점대상인 경우에는 신청자기준으로 감점(입주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적용받고 입주한 자가 입주 기준을 초과하여 퇴거되는 경우에는 감점적용 배제)
- ※ 감점기준상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에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임

**나. 전용35㎡형** : 수서동721-1

**전용45㎡형** : 수서동721-1

**전용49㎡형** : 등촌동661-6

**전용59㎡형** : 내곡1, 마곡지구14, 세곡2-3, 세곡2-8

**전용84㎡형** : 강일지구, 마곡지구7, 14, 상계장암1, 신내데시앙, 은평3-3, 10, 12, 장지1

**재건축/역세권 매입형**: 금천롯데캐슬 골드파크1차(59㎡, 71㎡, 72㎡, 84㎡),  
 상도두산위브트레지움(59㎡, 84㎡), 신대림2차 신동아파밀리에(59㎡),  
 래미안신반포팰리스(59㎡), 마곡힐스테이트(59㎡),  
 아크로리버파크반포(59㎡),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59㎡), 올림픽파크한  
 양수자인(59㎡), 래미안그레이트2차(59㎡), 래미안서초스위트(59㎡),  
 반포자이(59㎡), 서초교대이편한세상(59㎡), 송파래미안파인탑(53㎡),  
 수명산롯데캐슬(59㎡), 서울숲아이파크(64㎡)

**1) 일반공급, 우선공급 가점기준**

구 분	5점	4점	3점	2점	1점
① 공급신청자의 서울특별시 연속 거주기간 (만19세이후)	10년이상	7년이상 10년미만	5년이상 7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3년미만
② 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만 30세이후 또는 혼인신고일중 앞선날짜 기준)	10년이상	7년이상 10년미만	5년이상 7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3년미만
③ 공급신청자의 나이	50세이상	45세이상 50세미만	40세이상 45세미만	35세이상 40세미만	35세미만
④ 공급신청자의 부양가족수(태아의 수 포함, 공급신청자 제외) ※ 하단 부양가족 설명 참조, 직계존속은 신청자가 세대주일 경우에만 포함	5인이상	4인	3인	2인	1인
⑤ 공급신청자의 미성년(만19세미만)자녀(태아의 수 포함)의 수	5자녀이상	4자녀	3자녀	2자녀	1자녀
⑥ 공급신청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납입횟수 ( <b>전용85㎡이하</b> )	96회이상	84회 이상 96회 미만	72회 이상 84회 미만	60회 이상 72회 미만	24회 이상 60회 미만
⑦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 2점 ※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일 경우에만 가산되며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도 무주택이어야함.					
⑧ 소득기준(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50%초과 70%이하	70%초과 100%이하	100%초과 120%이하	120%초과 150%이하

※ 부양가족수 : ①공급신청자를 제외한 무주택세대구성원(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포함됨.) ②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신청자의  
 형제자매(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형제자매는 만19세 미만('97.04.30이후 출생자) 또는 만60세  
 이상('56.04.29이전 출생자)인 자에 한함) ③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공급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포함됨.) ④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는  
 태아

-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인 세대원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일치하는 배우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그 외 직계존비속 등은 부양가족 및 미성년자로 인정되지 않음.
- ※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경우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거 입주자 선정
- ※ 서울특별시 연속 거주기간은 성년(만19세)이후부터 기산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서울특별시 최종 전입일부터 기산)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된 경우 말소(거주불명등록 등)이후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 의미함.
- ※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별표1)의 기준을 적용한다.
- ※ 미성년(만19세미만)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의거 산정. 다만, 이(재)혼인 등의 경우 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신청자(현 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
- ※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의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고 해당기간을 계속하여 부양해야 함(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해당함).
- ※ ⑧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

구 분	50%	70%	100%	120%
3인이하가구	2,408,332원	3,371,665원	4,816,665원	5,779,998원
4인가구	2,696,577원	3,775,207원	5,393,154원	6,471,784원
5인이상가구	2,737,701원	3,832,782원	5,475,403원	6,570,483원

※ 유의사항(중요함)

임신중인 자녀(입양포함)를 부양가족, 미성년자녀로 인정받아 당첨(예비자포함)된 자는 입주시까지 출산(또는 임신유지) 및 입양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 등인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됨.(입증자료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에 한함)

2) 감점 산정기준 : 2009.11.30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의거 장기전세주택을 계약한 자에 해당함.

감 점 기 준	감점 점수
1.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10점
2.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8점
3. 1호 내지 2호 이외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6점

- ※ 신청자 및 배우자(분리 배우자 포함)가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관계법령에 의한 임차권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인 포함)에 한하며, 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감점대상인 경우에는 신청자기준으로 감점(입주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적용받고 입주한 자가 입주 기준을 초과하여 퇴거되는 경우에는 감점적용 배제).
- ※ 감점기준상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에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임

3) 상기 1)호 및 2)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녀수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전산추첨에 의한다.



구분	접수 일정	대상자	신청장소
인터넷·방문 청약접수	2016.05.16(월) ~ 05.17(화) (10:00~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선(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li> <li>수서동721-1 : 강남구에 거주하는 자(가구당 월평균소득이 70%이하)</li> <li>등촌동661-6 : 강서구에 거주하는 자(가구당 월평균소득이 70%이하)</li> <li>고령자주택 만 65세 이상인자</li> </ul>	인터넷청약 www.i-sh.co.kr/app  방문(인터넷)청약 SH공사 (지하철 3호선 대청역 8번출구)
	2016.05.18(수) (10:00~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공급 2순위</li> <li>수서동721-1 : 송파구, 서초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에 거주하는 자(가구당 월평균소득이 70%이하)</li> <li>등촌동661-6 : 양천구, 마포구,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자(가구당 월평균소득이 70%이하)</li> <li>고령자주택 만 60세이상 만65세 미만인 자</li> </ul>	• 접수장소: SH공사 2층 대강당
	2016.05.19(목) (10:00~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공급 3순위</li> <li>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수서동, 등촌동 장기전세주택은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li> <li>가구당 월평균소득 70%~100%이하 (수서동, 등촌동장기전세주택) 서울시 거주자</li> </ul>	1층 공공임대부

- ※ 청약접수는 인터넷으로 접수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사 방문(인터넷) 접수시 장시간 대기할 수 있으니 가정 등에서 인터넷 청약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본인의 가정,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일반인터넷청약은 각 순위별 청약 첫날 09:00부터 청약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첫날 오전은 인터넷접수 폭주로 청약에 어려움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다른 시간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방문인터넷 접수는 위 접수일정에 표시된 시간에만 운영합니다. 특히, 방문인터넷 접수의 경우 **1순위 청약 첫째 날은 방문고객이 많아 대기시간이 매우 길 것으로 예상되오니 2일째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세대의 300%를 초과할 경우에는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 각 순위별 청약 접수결과는 각 순위별 청약접수 종료 익일 오전 09:00에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 일반인터넷 청약은 각 순위별 최종 청약일 마감시간(17:00)까지만 청약할 수 있으니 반드시 동 시간 이전에 청약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자 선정은 주택유형별로 정한 순위에 따르며 해당순위 접수일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는 신청무효 처리됨[청약순위는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서 순위 및 인정횟수를 사전확인 바람].



- ※ 청약접수는 **인터넷 청약으로만 접수**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장애인, 고령자 등 인터넷사용이 어려운 고객은 공사에 방문하여 공사에 설치된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공급세대수의 상위 300%내외(우선공급은 140%내외)에 해당하는 신청인에 대하여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발표하며,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는 다음의 “7.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란의 심사서류 제출기간내에 직접 방문하여 해당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해당기간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자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서류제출기간내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바랍니다.
- ※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접수 완료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정이 불가합니다.

## 가. 인터넷청약안내

### “인터넷 청약, 10분에 OK!” , “24시간 가능한 인터넷 청약”

– 각 순위별 최종청약일 마감시간(17:00)까지만 운영 –

〈SH공사 장기전세주택 신청은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로만 청약접수 받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로 청약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인터넷 청약은 대기시간이 장시간(3~6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가급적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신청시 유의사항

신문광고나 공사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내용을 정확히 인지한 후 가급적 해당서류를 사전에 발급받아 확인한 후 신청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택공급신청서(해당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2you.com>에서 발급, 다만 국민은행가입자는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는 청약기간이후에는 해당은행에서 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공급신청서 또는 순위확인서(기타 대체서류 미인정) 미제출자는 청약취소 또는 탈락되오니 반드시 사전에 주택공급신청서를 발급받아 준비하여야 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가입당시(혹은 청약전)에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주택에 청약가능여부가 결정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입주자 저축 가입은행 방문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2you.com)에서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 다만, 전용85㎡이하 주택 신청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서(순위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됨.

## ○ 인터넷 신청

공인인증서 및 소득금액 등을 확인 후 SH공사 인터넷 주택공급 홈페이지(www.i-sh.co.kr/app)에 접속하여 인터넷 청약

- 신청순서 : SH공사 인터넷 주택공급 홈페이지(www.i-sh.co.kr/app)에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에서 해당 아파트 선택 → 서약서 체크 → 청약신청서 작성 → 작성청약서 최종확인 → 공인인증서 인증확인 → 나의 청약내역 확인(※기간내 청약취소후 재청약시에도 반드시 확인 바람, 이동전화 확인메시지는 통신사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 공인인증서는 인터넷뱅킹을 위하여 은행에서 발급한 인증서나, 5대인증기관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인터넷 신청 가능

※ 인터넷청약을 위한 사전준비 사항 : 공인인증서 발급/소지, 주택공급 신청서 발급(해당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f2you.com), 단, 국민은행가입자는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 다만, 전용85㎡이하 주택 신청자의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됨.

## ○ 신청시간

인터넷 신청시간은 신청접수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순위별 최종 신청일 마감시간까지 청약을 완료(저장 기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시 최종확인을 완료 하시면 수정이 불가능하고 신청 후 취소는 해당순위 신청마감일시까지만 가능하니 신청서 작성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해당순위별 신청마감 일시 전에는 야간에도 인터넷청약 가능합니다.

## 나. 방문인터넷신청 안내

〈 방문인터넷 청약은 대기시간이 장시간(3~6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가급적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로만 청약받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청약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바랍니다. 〉

- 인터넷설치장소 : SH공사 2층 대강당
- 신청기간 : 순위별 청약기간 및 방문인터넷 창구 운영시간 참조
- 청약방법 :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고객은 청약신청 위임장을 작성(청약을 위임)할 경우 공사 직원이 인터넷청약을 대행(이 경우 청약에 장시간 소요예상)할 예정임.

### ※ 청약위임시 제출서류

- 직계가족 및 배우자가 신청시 : 대리신청인(신분증), 신청인(신분증, 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제3자 신청시 : 위임장(신청인의 인감 날인) 1통, 신청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1통 및 인감도장,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 방문신청시 숙지사항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서울특별시 전입일,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 청약불입횟수, 가구당 월평균 소득, 도로명주소 등 신청시 반드시 사전 숙지 후 신청



###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16.05.26.(목) 14:00

- 발표장소 :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app>) “공고 및 공지”란 및 SH공사 게시판
- ※ SH공사 전화확인(ARS) 및 홈페이지상 “당첨자 조회하기”에서는 서류심사대상자 조회가 불가능하오니 공사 홈페이지 “공고 및 공지”란에 게시된 명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아래 제출기간내 서류 미제출시 탈락되오니 서류심사대상자 여부를 필히 확인후 해당 서류제출 바랍니다.
- ※ 지구(단지)별 접수기간에 서류접수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심사서류 제출기간 : 2016.06.01.(수)~ 2016.06.03.(금) 09:30~17:00

- 심사서류 제출장소 : SH공사 (우편접수 불가)
- 동호추첨 참관신청 : 동호추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동호추첨 참여 희망자는 심사서류 제출시 참관신청을 할 수 있으며, 참관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참관접수 선순위 신청자기준으로 선정.
- 제출서류  
 <서류심사 대상자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위 심사서류 제출기간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자에서 제외되며, 제출한 서류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필요시 보완서류 제출 요청)하여 당첨자 및 예비자 발표 예정이며,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바랍니다.>

- ①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서류심사용)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시 SH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가구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
  - 노부모부양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가점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동의(서명)받아 제출
- ② 공급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등 해당서류 추가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필요시 부양가족 확인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③ 임신진단서(임신 주수 및 태아수 기재된 원본에 한하며 부양가족, 미성년자녀수 등에서 임신중인 태아를 인정받은 자에 한하여 제출) 1통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임신 주수 및 태아수 기재)에 한하며, **임신확인서 및 진료내역확인서는 제출 불가**
- ④ 혼인관계증명서 : 동일순위 경쟁시 나형 가점을 적용받는 공급신청자 중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 가점 확인이 필요한 경우
- ⑤ 가점대상자 준비서류(해당자만 제출)

가 점 대 상 자	제 출 서 류	발 급 처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체근로자  ※ 제조업인 개인사업장 종사자도 신청 가능(임원은 제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중소제조업체가입분), 재직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해당(기관)직장 건강보험공단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이 불가할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공고일이 속한 달의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직인날인(개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관할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해당구청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추천서(자치구 확인),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의장 해당구청
국토교통부장관(서울특별시장)이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증빙서류	해당기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계약자중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가입자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통장 1면 (계좌번호 면)사본	본인
1년(252일)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된 자	공제부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경력증명서	건설근로자공제회 (☎1666-112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관할주민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외의 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외의 수급자 증명서	관할주민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차상위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 확인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관할주민센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인서 (책정기간 기재)	건강보험공단
장애인(고령자 주택 가점자)	장애인 증명서(등록일 반드시 기재)	해당구청, 관할주민센터

⑥ 우선/특별공급 대상자 준비서류(우선/특별공급 신청자에 한함)

우 선 공 급 대 상 자	제 출 서 류	발 급 처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부양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신혼부부 특별 공급 신청자	- 혼인관계증명서, 자녀의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원본(임신 주수 및 태아수 기재) - 청약예금, 부금 가입자는 청약통장사본 제출	관할주민센터, 의료기관 본인

※ 위 제출서류이외에도 서류심사상 필요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8

동호추첨 및 당첨자 발표



가. 동호추첨

- 주택의 동.호는 신청유형별로 동별, 층별, 향별, 형별 구분없이 무작위 전산추첨하며, 이 경우 추첨을 위한 난수는 청약자중 선정된 참관인이 무작위 추첨하여 선정함.
- 신청유형별로 신청자의 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급세대수의 50%내외의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여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시 예비순위에 따라 공급함(예비입주자 순위는 당첨자와 함께 게시하고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는 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까지임)
- 공급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추가로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된 세대수를 포함하여 해당주택의 예비자 및 도시계획철거민 특별공급대상자에게 추첨·공급함.

나. 당첨자 발표

- 당첨자발표 : 2016.07.29(금) 14:00
  -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app>) 및 SH공사 게시판, ARS 당첨자 조회
- 서류심사과정에서 서류미제출, 신청자격 결격, 감점 등의 사유로 탈락자가 많이 발생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서류 등의 심사없이 당첨자(예비자)로 발표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당첨자 발표시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내에 관련 심사서류를 제출하여 심사후 적합한 당첨자(예비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도 신청시 신청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주소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신청자는 당첨자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가. 계약장소 : SH공사

나. 계약일시 : 2016.08.23(화) ~ 2016.08.25(목) 09:30~17:00

다. 구비서류

- ① 계약금 납부영수증 ② 본인도장(본인서명가능) ③ 신분증 지참 및 사본 제출[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처리된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 계약체결은 신청자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대리할 경우에는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제3자가 대리할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증, 위임장(인감날인 및 본인발급 인감증명서 첨부) 제출.

#### 당첨 및 계약 취소되는 경우(주요사항 예시)

- 임신중인 자녀(입양포함)를 부양가족, 미성년자녀로 인정받아 당첨(예비자포함)된 자가 입주시 출산(또는 임신유지) 및 입양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 등인 경우
- 당첨자 발표이전에 동일한 입주자저축통장으로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에 당첨된 경우
- **무주택 세대구성원, 2인 이상 세대구성, 서울특별시 계속 거주, 전용50㎡ 미만 일반공급 신청시 기재한 자치구 계속거주 등 자격사항이 공고일 이후 변경되어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 주택소유자로 검색된 자가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당첨(예비)자, 추가 심사대상자 등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미성년자녀 등과 관련하여 감점되어 (예비)당첨 최저 점수 미만인 경우(당첨자는 예비자라도 미공급)
- 계약시 제출서류를 확인한 결과 신청사실과 다르거나, 위조 등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 추후 월평균소득이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의 월평균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 추후 부동산 및 자동차보유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 계약기간내 방문하여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 서류의 결격 및 미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
- 해당순위 신청접수일이 아닌 날짜에 신청한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
- 기타 사유로 인하여 당첨자 발표이후 관계법령위반등 부적격(착오에 의한 당첨 포함)으로 판명될 경우 등



- 해당순위 접수일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을 무효 처리함.
- **당첨자 발표 전·후에 주택소유(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부동산 및 차량소유, 소득입증, 가점서류 제출, 심사서류제출기간내 관련서류 미제출 등 입주자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관련사실의 입증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탈락 및 계약 취소됨.** 이와 관련하여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서류의 결격, 착오에 의한 당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계약)자가 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 취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본 공고문에 의한 당첨자 발표이전에 동일한 입주자저축통장을 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에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취소됨.
- 주택소유 및 자산보유 여부는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한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탈락 및 계약 취소(거절)됨.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3조 제4항, 제52조, 제53조”에 의함.
- **소명기한이 계약기간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기간내 계약금은 납부하되 계약은 소명완료후 체결함**
- 주소변경시에는 반드시 SH공사에 변경사실을 통보하여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장기전세주택 등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전세가격이 인상될 수 있음.
- 재계약시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주택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임대보증금의 할증 또는 퇴거되며, 그 외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요건, 부동산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음.**
- 1세대(본인+배우자+세대주 및 세대원) 1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1주택을 인터넷과 방문 등으로 중복 신청하거나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임대주택을 중복신청할 경우, 동일 무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단,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중복신청 가능)됨
- 주택신청시 기재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 함. 입주시까지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 입주자격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특히,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전용40㎡초과 임대주택 신청자는 공고일 이후 계속하여 2인이상 가구이어야 함(다만, 입주자모집공고시 해당 시·군·자치구에 공급되는 주택중 전용40㎡이하의 주택이 없는 경우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전용50㎡미만인 주택도 단독세대주로 거주가능) 또한, 공고일 이후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여야 함(위반할 경우 결격 처리).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수정 불가능(특히, 가점사항 등을 실제보다 낮게 또는 불리하게 신청한 경우 이후 수정 불가).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 이 주택은 양도, 전대할 수 없으며 이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하며, 공고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계법령, 공사홈페이지 공고내용, 공사에서 배부하는 공고(안내)문 등을 참고.
- 사회보장정보(범정부)시스템에 의한 조사확인 절차상 이의신청기간내 소득자료의 미제출 등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됨
- 잔여공가는 기존 입주자의 퇴거, 미계약 등으로 발생된 공가를 재공급하는 것으로 도배, 장판 등 일부 마감재의 파손 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파손부분은 공사에서 교체하나 각 마감재 전체의 교체를 원할 경우에는 입주자 본인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함. 공사 현황은 당첨자 발표후 계약체결전까지 해당주택에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음.
- 주택소유여부에 대한 판정기준은 공고문 후단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참조

## 11 임대신청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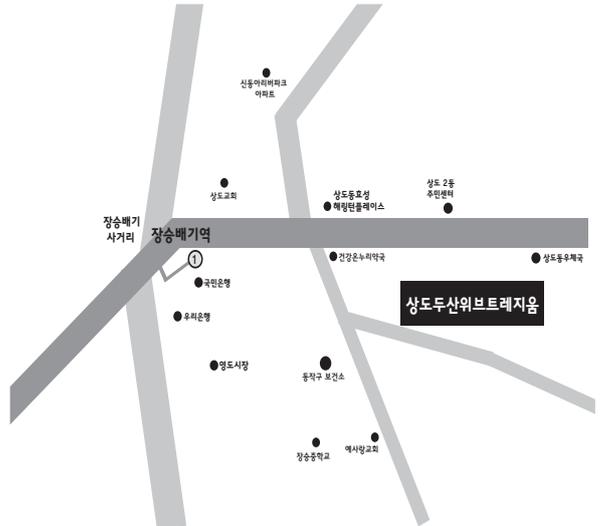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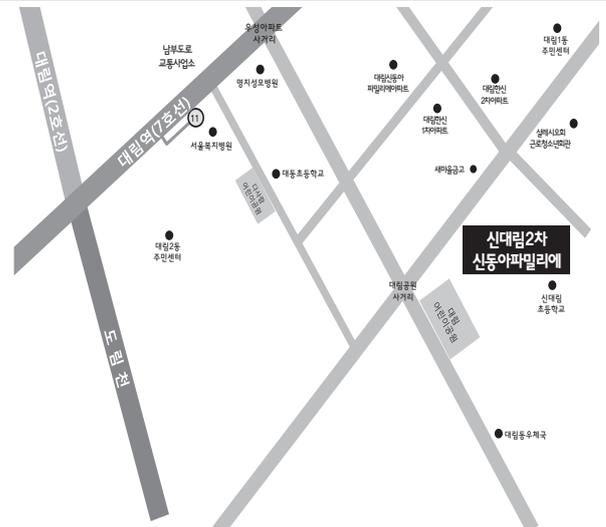
- 청약관련 문의 : ☎1600-3456(SH공사 콜센터)
- 당첨자 확인 :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SH공사 게시판 및 ARS(1600-3456)  
 ※ 유선(전화)확인으 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SH공사 홈페이지 및 1층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2 견본주택 및 현장안내



- 금회 공급단지는 공사현장 여건 등에 의해 견본주택을 미운영합니다.
- 다만, 현장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하여 금회 공급되는 모든 단지에 대하여 전자팸플릿(또는 내부인테리어 사진)을 공개하오니 SH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임대” 클릭한 후 메뉴상 ‘전자팸플릿’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전에 현장 주변여건을 확인하여 입주에 불편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잔여공가 공급단지에 대한 전자팸플릿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시 제작된 것으로 이후 개발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내용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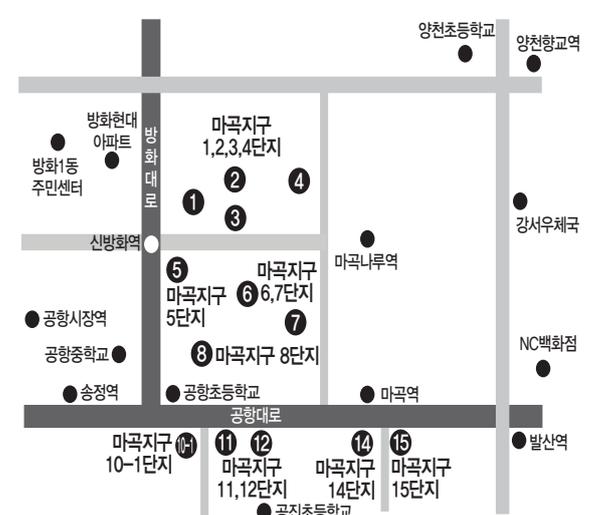
구 분	금천롯데캐슬골드파크 1차	상도두산위브트레지움
위 치	금천구 독산동	동작구 상도동
교통편	금천구청역(1호선) 1번 출구에서 좌회전 후 직진, 이랜드해가든아파트 앞에서 우회전	장승배기역(7호선) 1번 출구에서 직진 후 동작구 보건소 방면으로 우회전 후 좌회전
건본 주택운영	현장여건상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현장여건상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약도		

구 분	신대림2차 신동아파밀리에	래미안신반포팰리스
위 치	영등포구 대림동	서초구 잠원동
교통편	대림역(7호선) 11번 출구에서 직진 후 우회전, 대림공원 사거리에서 좌회전 후 우회전	잠원역(3호선) 4번 출구에서 잠원문화복지센터 방면으로 직진, 좌회전 후 직진
건본 주택운영	현장여건상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현장여건상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약도		

구 분	마곡힐스테이트	아크로리버파크반포
위 치	강서구 마곡동	서초구 반포동
교통편	신방화역(9호선) 6번 출구에서 직진 후 좌회전, 마곡역(5호선) 1번 출구에서 직진 후 우회전	신반포역(9호선) 1번 출구에서 우회전 후 직진
견본 주택운영	현장여건상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현장여건상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약도		

구 분	고덕레이미안 힐스테이트	성내올림픽파크 한양수자인
위 치	강동구 고덕동	강동구 성내동
교통편	고덕역(5호선) 1번 출구에서 직진 후, 두레근린공원 삼거리에서 좌회전 후 직진	강동구청역(8호선) 2번 출구에서 직진 후 횡단보도 이용, 강동구청역(8호선) 3번 출구에서 좌회전 후 직진
견본 주택운영	현장여건상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현장여건상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약도		

구 분	강일지구	내곡보금자리지구 1단지
위 치	강동구 강일동	서초구 내곡동
교통편	상일동역(5호선) 2번 출구에서 뒤돌아 동명근린공원 방면으로 직진 후 우회전	양재시민의숲역(신분당선) 4번 출구에서 직진 후 양재꽃시장 정류장에서 470번 버스 탑승, 서초포레스타2단지 앞 정류장 하차 후 도보 이동
견본 주택운영	현장여건상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현장여건상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약도		

구 분	등촌동 661-1	마곡지구 7, 14단지
위 치	강서구 등촌동	강서구 마곡동
교통편	발산역(5호선) 3번 출구에서 직진 후 NC백화점 방면으로 우회전 후 직진, 가양역(9호선) 8번 출구에서 직진 후 우회전	마곡7단지 : 마곡나루역(9호선) 1번출구 직진후 횡단보도 이용, 마곡역(5호선) 1번 출구에서 직진 후 우회전. 마곡14단지 : 마곡역(5호선) 6번 출구에서 직진 후 우회전, 마곡중앙로 방면으로 직진
견본 주택운영	현장여건상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현장여건상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약도		

구 분	발산지구 4단지	상계장암 1단지
위 치	강서구 발산동	의정부시 장암동
교통편	마곡역(5호선) 6번 출구에서 직진, 좌회전 후 직진	도봉산역(7호선) 2번 출구에서 직진, 누원고등학교 앞 중랑천을 지나 좌회전 후 직진
견본 주택운영	현장여건상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현장여건상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약도		

구 분	세곡2보금자리 3단지	세곡2보금자리 8단지
위 치	강남구 자곡동	강남구 율현동
교통편	수서역(3호선) 6번 출구에서 강남06, 강남06-1 승차 후 세곡문화복지회관 정류장에서 하차 후 도보 이동	수서역(3호선) 6번 출구에서 강남06, 강남06-1 승차 후 세곡문화복지회관 정류장에서 하차 후 도보 이동
견본 주택운영	현장여건상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현장여건상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약도		

구 분	세곡리엔파크 1, 3, 4단지	송파파크데일 2단지
위 치	강남구 세곡동	송파구 마천동
교통편	수서역(3호선) 6번 출구에서 세곡동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후 우회전, 대왕초등학교를 지나 첫 번째 삼거리에서 좌회전	마천역(5호선) 2번 출구에서 천마산 방향으로 직진
견본 주택운영	현장여건상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현장여건상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약도		

구 분	수서동 721-1	신내3지구 1, 2단지
위 치	강남구 수서동	중랑구 신내동
교통편	수서역(3호선,분당선) 5번 출구에서 500m	봉화산역(6호선) 3번 출구에서 2114번 버스 승차 후 신내우디안아파트 107동 앞 정류장 하차
견본 주택운영	현장여건상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현장여건상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약도		

구 분	신내데시앙	신정이펜하우스 2, 3, 5단지
위 치	종량구 신내동	양천구 신정동
교통편	봉화산역(6호선) 3번 출구에서 직진 후 우회전	신정네거리역(2호선) 2번 출구에서 직진 후 신정사거리 정류장에서 98, 6614 버스 승차 후 신정이펜하우스2단지정류장 앞 하차
건본 주택운영	현장여건상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현장여건상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약도		

구 분	은평2지구 3단지(은평뉴타운 마고정)	은평3지구 3(은평뉴타운 구파발), 10(폭포동), 12단지 기자촌(기자촌11단지)
위 치	은평구 진관동	은평구 진관동
교통편	구파발역(3호선) 3번 출구에서 720번 버스 승차 후 동부센트레빌320동 앞 정류장 하차, 도보 이동	구파발역(3호선) 3번 출구에서 720번 버스 승차 후 신도중학교 정류장에서 하차 후 도보 이동
건본 주택운영	현장여건상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현장여건상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약도		

구분	장지지구 1, 4단지	천왕2지구 2단지
위치	송파구 장지동	구로구 오류동
교통편	장지역(8호선) 2번 출구에서 직진 후, 장수공원 방면으로 직진	천왕역(7호선) 3번 출구에서 직진
건본주택운영	현장여건상 건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현장여건상 건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약도		

구분	천왕이펜하우스 1, 3단지	래미안그레이튼 2차 (래미안그레이튼 진달래2차)
위치	구로구 천왕동	강남구 역삼동
교통편	천왕역(7호선) 1번 출구에서 뒤돌아 직진 후 좌회전	선릉역(2호선) 4번 출구에서 직진 후 르네상스호텔사거리에서 좌회전 후 직진, 한티역(분당선) 7번 출구에서 직진 후 우회전
건본주택운영	현장여건상 건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현장여건상 건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약도		

구 분	래미안서초스위트	반포자이
위 치	서초구 서초동	서초구 반포동
교통편	신논현역(9호선) 7번 출구에서 직진 후 좌회전, 강남역(2호선) 9번 출구에서 진흥아파트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후 우회전	반포역(7호선) 1번 출구에서 직진 후 우회전
견본 주택운영	현장여건상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현장여건상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약도		

구 분	서울숲아이파크	서초교대이편한세상
위 치	성동구 송정동	서초구 서초동
교통편	어린이대공원역(7호선) 5번 출구에서 화양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후, 동일로를 따라 직진 후 좌회전	교대역(2호선,3호선) 4번 출구에서 직진 후 좌회전
견본 주택운영	현장여건상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현장여건상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약도		

구 분	송파래미안파인탑	수명산롯데캐슬
위 치	송파구 송파동	양천구 신월동
교통편	송파역(8호선) 2번 출구에서 직진 후 좌회전, 오금역(5호선) 6번 출구에서 직진 후 좌회전, 신가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이용 후 우회전	화곡역(5호선) 7번 출구에서 직진 후 마을버스06 승차, 수명산입구 정류장에서 하차 후 도보 이동
견본 주택운영	현장여건상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현장여건상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약도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53조)

### ○ 검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해당세대) : ①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전원 (공급신청자 포함), ②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검색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간주)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 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05.0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건물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호 관련 별표1)**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 [별표1] [소득항목 설명 및 공적자료(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공적자료(소득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장애인고용공단자료(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근로소득)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노동부 '일모아'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농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가구원의 소득은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 기관 등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소득 심사업무 처리 절차도



※ 소득의 일반적인 조사 및 소명처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훈령·고시 또는 지침에 의함.

※ 상시근로자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  
①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②국민연금공단 자료 ③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④국세청 자료 순으로 반영됨.

## ■ 소득 소명 반영 여부 주요 예시

소명사항	반영여부
동일사업장 소득 중복	반영 (높은 금액 반영)
공고일 현재 휴직자 또는 휴업	미반영 (해당 소득 포함)
소득자료가 현재 소득과 상이	소명기간내 원천기관 자료 수정 및 확인서 제출시 반영

※ 소명관련 주요사항을 예시한 것으로 소득 종류에 따라 소명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며, 조회된 공적자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적자료 원천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함.

## || 유의사항 (공통) ||

- 홈페이지에 게재한 전자팸플릿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작된 것으로 개발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팸플릿 상의 평면도와 달리 건축심의 및 인허가(사업승인) 과정에 따라 구조, 설비 및 발코니 위치, 모양, 면적 및 실 구성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다양한 주거유형의 도입으로 단위세대 평형이 상하층간에 다르게 설계된 경우도 발생하며, 동일 평형 중 발코니 면적 및 설치위치가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은 사업추진과정 중 지구계획 변경(각종 영향평가 포함)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단지설계, 동별설계, 세대내부설계, 외부 및 내부의 시설물, 자재 및 형태 등이 인허가 관청의 명령, 자재의 품질, 자재가격의 비정상적 급등, 갑작스런 관련법규 변경 등에 의해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음.
- 지구 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제반여건 변동에 따라 당초 추진계획이 지연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 고려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내용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에 당해 지구(또는 단지)를 반드시 방문하여 소음·환경저해 등 단지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주변 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조감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쇄 및 편집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음.
- 공동주택의 다양한 주거유형의 도입으로 단위세대 평형이 상하층 간에 다르게 설계된 경우도 발생하며, 동일 평형 중 발코니 면적 및 설치위치가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도로와 단지의 지표면 레벨차이로 인해 옹벽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각 타입별 아트월 및 가구, 도배, 타일, 위생도기와 마감재의 경우 단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별 동일 타입이라도 평면상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동일 타입이라도 측벽에 위치한 세대는 벽체마감에 따라 실제면적이 더 클 수 있음.
- 현관, 발코니, 화장실 단차는 세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 할 수 있으며, 보일러 가동시 온수분배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설계 배치상 기계실, 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급배기용 환기탑, 분리수거함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등 설치로 인해 인근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소음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하기 바람(지상 쓰레기보관소에 인접한 동은 냄새, 소음 및 미관저해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유아용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관리동 및 경로당, 보행로, 운동시설, 주민공용시설 등의 설치로 인접세대에 생활 소음피해, 실내투시로 인한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의 경우 경사진 도로 및 곡선도로, 주통행도로, 인근산책로, 부대시설이용 등으로 인하여 차량전조등, 보안등, CCTV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차량출차 주의등과 인접한 일부동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호수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 공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동별배치에 따라 같은 방향이라도 층에 따라 일조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동의 저층부 등 일부 세대에서는 조망 및 일조권에 영향을 받을 수으니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피공간이나 실외기실 또는 이형평형으로 인한 상하층 간에 설치되는 우배수관에 의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새시는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하였으나, 외부 발코니 새시 설치로 발코니창, 콘크리트난간 및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하여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라며, 특히 빨래 건조, 가습기 사용 등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주의해야 함.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하절기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이므로 발코니에 설치된 개별보일러, 수전류, 배수관, 트랩(Trap) 등이 겨울철에는 동결 또는 동파 될 수 있음.
- 겨울철 입주 시 구조체가 축열되어 있지 않고 공가세대 등으로 인한 열손실로 난방효과가 적게 나타날 수 있음
- 세대내 주방가구의 김치냉장고, 냉장고 및 에어컨 실외기 공간계획은 일반적인 사이즈로 계획하였으니 계약

전에 반드시 실제크기를 확인해야 함.

- 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조명기구 위치변경은 불가함.
- 평형별로 에어컨 배관이 다르게 설치되어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소음이 내부로 전달될 수 있음.
-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드레인(물빠짐) 배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에어컨 형태에 따라 에어컨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입주 후 입주자가 관련법령의 절차에 따라 발코니를 개별적으로 확장할 경우 임의변경으로 인한 구조적문제, 결로, 누수, 환기장비 흡입구 막힘 등의 문제는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발코니 면적은 확장 전(비확장형) 기준으로 확장형의 실유효면적과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대피공간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45호]』에 의거하여,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세대 내부에 설치된 대피공간은 화재시 비상 대피공간이므로 입주자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임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는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대피공간은 건축법상 긴급 상황으로부터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설계 및 시공되는 바, 단열재 미설치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 환기를 통하여 결로를 예방하여야 함.
- 복도형 아파트 복도면 상부에 소화시설(스프링쿨러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준공 후 입주민의 인테리어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기 시설물을 임의로 해체 또는 파손시 그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 및 사용상의 문제는 하자보수가 불가하며, 이로 인한 방법상의 문제가 발생시 책임은 입주자 부담임.
- 세대 내·외부에 방범창은 설치되지 않으며, 설치를 원하는 세대는 개별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공용부의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이설, 증설, 변경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출입구에 설치된 주차관제설비 위치는 단지 여건상 경비실과 떨어져 있을 수 있고,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한 주출입구, 단지 내 보도는 점포 상가 입주자(방문객 포함)와 아파트 입주자가 공동사용 할 수 있음.
- 지하층 주차장에서 물청소 및 세차 등을 할 경우 트랜치로 오염된 물이 흘러 시설물 및 차량 등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차장 내에서 물청소는 불가함.
-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로 출입하는 동 출입문은 동별 세대별로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하여 각각 동 출입문 크기가 다를 수 있음.
- 일부세대의 경우 단지 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삿짐 운반시 승강기를 이용하여야함.
- 단지 내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변압기, 스위치패드 등)이 동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음.
- 방범용 CCTV는 지하주차장, 승강기, 단지출입구, 어린이놀이터, 지하층 및 1층 주출입구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감시 취약지역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공용에 설치된 CCTV 설비는 야간에 설치 위치 환경에 따라 화질이 주간과 다를 수 있음.
- 이동통신 서비스용 중계기 시설은 전자파 위해성 민원으로 설치되지 않으므로 휴대전화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음(해당 시설물은 입주 후 입주자와 이동통신사간 협의를 통하여 설치 가능)
- 각 동의 저층부 일부세대는 야간에 보안등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을 받을 수 있음.
- 1층 세대는 가스배관이 불가피하게 창문하단으로 지나갈 수 있음.

- 공동생활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및 해당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 및 기타 변동사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 설립계획, 학급수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 교육청에서 단지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간 온도차가 클 때(음식 조리, 가습기 사용, 실내 빨래 건조 등) 충분한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건축물 외관, 단지명칭, 호수번호, 외부색채와 계획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및 협의에 따라 입주 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계획은 수급여건 및 현장여건,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의 결과에 따라 수종(규격, 수량 등) 및 수목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계약 해지될 수 있음.
- 입주자 퇴거시 세대 전용부분 시설물에 대한 파손(고장)의 경우 원상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람.
- 매입형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조합분양주택과 비교하여 일부 시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일부 단지의 경우에는 공용면적이 다소 넓거나,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으로 관리비 등이 다소 높을 수 있음.
- 장기전세주택은 분양주택 및 타 임대 유형과 혼합하여 동일 단지, 동일 동(라인)에 공급될 수 있음.

## ■ 금천롯데캐슬골드파크 1차(군부대 특별계획구역) ■

-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변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과실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의 명칭, 동 표시, 건물 외관 및 외부색채, 그래픽, 조경 등은 해당 관청과 협의(자문) 과정에 따라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주민운동시설,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전거 보관소, D/A(기계실, 전기실 등의 급배기구) 등의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등으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산책로, 단지 내외 도로 등에 의해 생활권 및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지붕에 인접한 저층 세대는 조망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건축사항 및 단지 내 시설물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향·층·동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 및 커뮤니티지원시설은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운영 및 유지, 관리하여야 함. (커뮤니티지원시설내 매각시설인 어린이집 제외)

- 주택법상 부대복리시설 중 작은도서관의 가구(책상, 의자) 및 도서(1,000권)와 게스트하우스의 침대를 제공하며, 이외의 관리사무소, 어린이집1, 경로당, 각 동 주민카페의 가전·가구 및 집기·비품은 제공되지 않음.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커뮤니티시설 중 피트니스클럽과, 실내골프클럽의 운동기기 및 라커와 세미나실, 독서실, 키즈스터디룸, 그룹스터디룸의 가구(책상, 의자)를 제공하며, 이외의 유물전시관, 마을회관(하모니홀), 문화센터(캐슬리안센터 컬처), 어린이집2, 노인시설(힐링센터)의 가전·가구 및 집기·비품은 제공되지 않음.
- 주택법상 부대복리시설 및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커뮤니티지원시설의 옥상 및 주위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될 수 있어 인접세대 및 시설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공동장소인 광장, 놀이터, 주민공동시설 등 각 부대복리시설로 인해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 설치되는 아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커뮤니티지원시설은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임을 양지하시기 바람.

독서실	177.7212㎡	마을회관 (하모니홀)	212.8483㎡	문화센터 (캐슬리안센터- 컬처)	508.3529㎡
스포츠센터 (캐슬리안센터- 스포츠)	2,710.7184㎡	노인시설 (힐링센터)	249.3641㎡	어린이집2 (키즈클럽2)	654.8672㎡
회랑갤러리	418.0240㎡	선큰갤러리	580.2163㎡	유물전시관	208.2132㎡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커뮤니티지원시설 계			5,720.3256㎡		

-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커뮤니티지원시설은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및 「서울시 역세권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조건으로 설치되는 시설임
-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커뮤니티지원시설 중 어린이집2(654.8672㎡)는 매각대상 시설임
- 공동주택 분양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시행함.
- 본 사업구역은 김포국제공항 장애물 제한구역 진입표면구역에 속하여 항공기 이착륙 구역에 위치하므로 항공기 운항시간대(06:00~23:00)에는 항공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사업구역 인근의 공군부대가 위치해 있어 해당 부대의 전/평시 및 수시 작전임수 수행을 위한 헬기장운용으로 헬기 이착륙시 소음 및 바람에 의한 비산물에 따른 피해가 있을 수 있음.
- 「군부대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13.8.22고시)」에 따른 사업구역내 초등학교부지에 대하여 교육청의 토지매입 및 공사기간 확보등을 감안하여 개교 시기는 추후 조정될 수 있음.
- 철로변 및 서부간선도로(서해안 고속도로)변에 위치한 세대는 기차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장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람.
- 금천구심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 등 인접 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시설 설치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 개발 및 실시계획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는 민간시행 지침 제22조(공공보행통로)에 의거 24시간 일반인이 통로로 이용할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음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통보함
- 단지 서측 철도부지에 설치예정인 방음벽(H=18m이하)은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므로 향후 협의 과정에서 설치위치, 규모, 시기가 변경될수 있음(방음벽 시설로 인한 일조 및 조망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전 해당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 단지 서측으로 고속도로 및 고가도로, 철로 등이 운행중에 있으므로 이로 인한 소음, 진동,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북동측에 D1-1블럭(최고 층수 41층, 호텔 및 오피스텔, 업무시설등) 및 D1-2블럭(최고 층수 45층, 주상복합)이, 단지 남측에는 D2-2블럭(최고 층수41층,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이 계획되어 있으며, 추후 세부계획 진행에 따라 규모, 시기, 디자인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주변단지(D1-1, D1-2, D2-2블럭) 신축으로 인하여 공사시 소음, 진동,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당 단지의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등이 침해될수 있음
- 본 단지는 분양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을 한 개의 동에 함께 계획하는 경우로 분양주택만의 동선체계나 공동이용시설사용상의 불리등은 없으므로 계약전에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람
- 문화재청의 보존조치에 의거하여 본 단지내 계획되는 문화재 관련 시설은 관련법령에 의해 향후 훼손 및 임의 변경이 불가한 시설임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전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아파트의 도로변 세대는 교통량에 따라 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팜플릿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심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마감자재 내용은 m<sup>2</sup>별, Type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선풍통 및 드레인 위치와 개수는 본시공시 변경되거나 추가 혹은 삭제될 수 있음.
- 향후 예비 소음영향평가 실시 후 결과에 따라 일부구간에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음.
- 인접 지역 개발로 인해 향후 입주 시 먼지,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향후 당 아파트의 주변 신축 건축행위로 인하여 건축사항과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 지 내 시 설	건축한계선 외부에 각종 시설물 설치시 법에 저촉되어 철거될 수 있음.
	당 단지 공동주택 주동의 구조는 '리모델링 가능한 구조'기준 적용을 통하여 인동거리가 완화되어 있음..
	입주민 전용주차장은 북동측 그라운드층과 지하 1층에, 남서측은 지하 1~2층에 계획되어 있음. 근린생활시설 전용 주차장은 단지 동측 출입구 인근 지상 1층에, 휘트니스클럽 등 스포츠시설의 외부 이용자들은 단지 북측 출입구로 진입하여 그라운드층 주차장 진입구 인근에 별도 구획하여 계획되어 있음.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층수가 동별로 상이하니 참고 바람.. (101,102,103,104,105,107,108,110, 111동은 2개층 / 106, 109동은 3개층 연결)
	단지조경 및 세부식재 계획은 상세설계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다소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설치규모는 인허가 관청과의 협의 및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 지 내 시 설	단지내 배치되는 주민광장, 어린이 놀이터, 휴게소, 주민공동시설, 중앙광장, 기타 야외 주민운동시설 및 대지 내 공지, 소방도로, 보행가로변에 인접한 세대에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단지내 조경식재, 야간조명 및 경관조명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름..
	장기전세주택 설치로 인하여 일부 주민공동시설은 외부인과 공동으로 사용되므로 입주자 임의 변경 시 구청 승인이 필요함.
	단지내 설치되는 공유시설물(중앙광장 및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및 대지 내 공지, 단지내외 도로, 보행가로변에 인접한 세대에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각종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은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의해 본 공사 시 용도, 규모, 구조, 동선, 입면색채,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단지 중앙 지하1층에는 실내골프클럽, 피트니스클럽 등이 있으며, 그라운드층에는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문화시설 등이 설치됨.
	실내스포츠시설에는 운동기기 및 라커장이 제공되고, 북카페에는 도서 및 가구(책상, 의자)가 제공되며, 독서실과 스마트홈 오피스 가구(책상,의자)가 제공됨..
	단지 내 부대시설 일체의 운영 및 유지관리는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하여야 하며, 상기 제공품을 제외한 부대시설의 가전·가구 및 집기·비품은 시공, 설치되지 않음.
	주민공동시설 내·외부 디자인과 창호사양 및 규격은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공공장소인 중앙광장,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설치로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의 옥상 및 주위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될 수 있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일부 어린이집은 매각될 수 있으며, 단지 대지지분 산정 시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외관디자인(입면 마감재료 및 색채, 축벽디자인, 지붕장식물, 몰딩, 창틀 모양 및 색채 등), 필로티, 동현관, 캐노피, 지하출입구, 난간 디테일, 문주, 천창, DA, 조경패턴 등 외부 시설물 등은 시공 시 관계기관의 협의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대지 경계에는 사업승인조건에 따라 담장이 설치되지 않는 열린 아파트로 계획되므로 외부인의 단지 내 출입이 가능함.
	단지 내 브랜드 로고의 위치, 크기 및 동 표시 등은 광고물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당 단지는 건축법, 주택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 입면의 돌출발코니, 입면 장식, 지붕 태양광 집열판,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동·호수 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관하여 시행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당 단지는 차량 및 보행자가 출입 가능한 출입구가 북서측 및 남서측, 북동측에 3개소, 남동측에는 보행자 전용 출입구가 1개소 설치됨. 이 중 북서측 출입구를 스포츠시설 외부 이용객과 공동 사용하고 그라운드층 주차장에 외부 이용객용 주차공간이 별도 계획되어 있음.(약 20여대) 북동측 출입구는 근린생활시설 이용객과 공동 사용하게 되나 근린생활시설 이용객은 지상주차장만 사용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은 사용이 불가함.
외부도로에 면한 문주, 캐노피, 조경 패턴 및 단지 내 시설물의 디자인은 본 시공 시 인허가에 따라 디자인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외 도로(단지 주변 도로, 단지 내 차로 및 비상차로,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단지 주·부 출입구에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차량 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각종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각 동 1층에는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설치될 예정이며,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냄새 및 해충에 의한 피해,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해당 설비는 주동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 및 규모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 시설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 천창, DA 위치로 인해 저층 일부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 받을 수 있음.
	단지중심에 지하 커뮤니티시설로의 통행 및 지하공간에 대한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선큰공간과 일부 공간에 지붕이 계획되어 있으며, 소음발생 및 부주의 시 낙하의 위험이 있음.
	선큰 공간 및 다리, 지붕은 상세설계 및 시공성, 구조 검토 등을 통하여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주동 저층부는 부분 뿔칠 마감으로 시공되며, 색상 및 디자인은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109동 최상층에는 소화 저수조가 설치됨.
	각 계단실에서 진입하는 세대수가 2호인 경우 엘리베이터는 1대가 설치되며, 3호가 조합된 계단실의 경우 엘리베이터는 2대가 설치됨.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경로당/어린이집 등의 옥상 및 주변에는 에어컨실외기 및 급배기환기팬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인접한 저층 세대에 조망권 침해 및 소음, 진동,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6~111동)
단위 세대 공통	본 사업지는 서울시 공동주택 심의기준에 따라 오픈·돌출형 발코니를 계획하였으며, 이는 확장공사 및 출입이 불가한 공간임.
	동조합으로 인한 요철과 입면디자인으로 인한 장식물당으로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
	일부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 문주의 야간조명, 진출입 차량의 전조등 등에 의하여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일부 저층세대는 쓰레기 분리수거함, DA,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단지 내 외부 도로, 단지 출입구, 주차장 진입로 등이 인접하여 소음 및 조망권 등 환경권침해를 받을 수 있음.
	각 동 고층부 세대는 옥탑장식물의 태양광 집열판 및 경관조명 등에 의하여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정화조는 지하 2층 104동 하부에 계획되어 있으며, 정화조 배기탑은 104동에 설치됨.
	외부창호는 향후 풍압·풍동 시험과 사용성 향상, 미관개선 등을 고려하여 유리두께 및 창호사이즈, 프레임두께, 설치위치, 개폐방향, 디자인 등 제반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
	확장형 세대의 경우 거실 및 침실, 주방 등 외부창에 자연환기설비가 설치되며, 본공사 시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대피공간 외부창호는 안전상 화재 및 비상시에만 개폐 사용하시기 바라며, 각 세대의 대피공간은 별도로 구획되어 있음. 1~2층 세대의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문은 방화문이 아닌 철제도어로 시공됨.
	현관신발장, 복도장, 주방가구각실 붙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며, 추후에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의 마감재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음.
	세대내부 마감자재의 색상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음.
	일부 발코니에는 선홍통 및 드레인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전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는 일부 물청소를 위한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세탁기, 김치냉장고등을 두는 발코니의 경우 비난방, 비단열 공간이며, 별도의 천장마감이 없음.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마감자재자체의품질상하자판단은 KS기준에 의함.
	타일줄눈 위치 및 각 약세사리 위치는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팜플릿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일부 타입에 공용 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일부세대는 공사시행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세대로 사용될 수 있음.	
동절기 보일러 연도의 결로로 인해 낙수가 발생할 수 있음.	
주방 직배기로 인하여 상부층 세대 및 인근세대에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단위 세대 공동	후면발코니에 도시가스 배관 및 계량기가 설치됨.
	주방가구 및 수납가구가 설치되는 후면 및 바닥, 천장부분은 별도의 마감 없음.
	59A, 71, 84A, 84B, 84C 타입의 경우 대칭형으로도 시공되오니, 계약시 호수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101동	단지 북서측 20m 외부 도로에 면하는 세대는 소음발생의 우려가 있음.
	단지 출입구 및 그라운드층 주차장출입구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프라이버시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지상층에 어린이놀이터 및 패밀리가든, 휴게소가 인접하여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주동 동측 지하 2층에 펌프실 및 저수조, 기계실이 위치하므로 다소의 진동 및 소음 발생 우려가 있음.
102동	단지 서측 20m 외부 도로에 면하는 세대는 소음발생의 우려가 있음.
	지상층에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 패밀리가든이 인접하여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어린이집 및 경로당 측면의 조경부지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103동	단지 서측 20m 외부 도로에 면하는 세대는 소음발생의 우려가 있음.
	단지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프라이버시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지상층에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 그린플라자가 인접하여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104동	단지 서측 20m 외부 도로 및 남측 공공보행통로에 면하는 세대는 소음발생의 우려가 있음.
	단지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프라이버시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지상층에 열매정원 및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휴게소가 인접하여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105동	지하에는 전기실, 발전기실, 장비반입구, 지하저수조가 계획되어있어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침해 및 소음,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음.
	지상층에 어린이집 및 주민운동시설, 그린플라자, 피크닉 가든,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용 출입구 등이 인접하여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106동	주동 하부에 게스트하우스 등 주민공동시설이 인접하여 계획되어 있으므로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음.
	지상층에 어린이놀이터, 보육시설, 휴게소, 공공보행통로 등이 인접하여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107동	단지남측 공공보행통로 및 동측 상업가로에 면하는 세대는 소음발생의 우려가 있으며 특히 근린생활시설 상부에 있는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 각종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지상층에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보육시설 등이 인접하여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108동	단지 동측 상업가로에 면하는 세대는 소음발생의 우려가 있으며 특히 근린생활시설 상부에 있는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 각종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단지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프라이버시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지상층에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아트플라자, 휴게소 등이 인접하여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109동	동서측 공공보행통로에 면하는 세대는 소음발생의 우려가 있음.
	주동 하부에 주민공동시설과 공공보행통로가, 지상층에 아트플라자,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등이 인접하여 계획되어 있으므로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110동	단지 북서측 20m 외부 도로에 면하는 세대는 소음발생의 우려가 있음.
	단지 출입구 및 그라운드층 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프라이버시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111동	주동 하부에 주민공동시설과 공공보행통로가, 지상층에 아트플라자, 피크닉가든,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등이 인접하여 계획되어 있으므로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단지 북서측 20m 외부 도로에 면하는 세대는 소음발생의 우려가 있음
	지상층에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등이 인접하여 계획되어 있으므로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단지 동측 상업가로에 면하는 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상부에 있는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 각종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단지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프라이버시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 상도두산위브트레지움(상도동 169-5) ||

-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변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과실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주택은 준공이 완료된 단지로 가구, 가전, 마감수준, 부대복리시설, 조경 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주택은 주택조합, SHIFT, 일반분양이 혼합되어 있는 단지로 선택가능 세대를 동호수 배치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모든 주택의 마감재는 동일함.
- 배치상 기계, 전기실, 급배기구, D/A, 정화조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쓰레기투입구 인접세대에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경관조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경관조명에 의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부출입구, 부대복리시설, 단지내 상가, 주차출입구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상황에 따라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본 주택은 공동주택 통합 경비시스템(용역경비)이 적용되는 아파트이며,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은 매월

입주자 관리비에 합산되어 부과됨.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소음측정결과 기준치 미달 시 도로변에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일부 저층 세대는 조망 등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세대내부의 욕실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또한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우/오수 선홈통이 설치되어 우천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확장시 선홈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설치됨
-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에는 물을 사용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부위에 일부 결로가 발생할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기적인 실내환기 필요)
- 인접 세대 또는 인접 침실 미확장시 단열재 추가 설치로 인해 침실 및 거실 등의 일부 벽체가 돌출되고 천정의 형태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고 결로도 발생 가능함.
- 세대내 및 세대 간 경계벽은 경량구조로 설치되어 있어 일반 벽식구조에 비해 소음전달이 클 수 있으며 중량물 설치, 못 박기 등에 의한 벽체가 파손될 수 있고 벽에 매립 되어있는 전기, 통신 배관배선을 훼손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아트월 벽면에 벽걸이TV 설치 시 벽체 드릴링 작업에 따른 전기, 통신, 에어컨 매립 배관이 파손될 수 있으니 작업 전 관리사무소에 확인하기 바람.
- 아파트 지하 PIT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저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및 진동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향후 당 아파트의 주변 신축 건축행위로 인하여 건축사항과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어린이집은 동작구청에 기부채납된 시설로 정원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커뮤니티 지원시설은 입주민의 시설과 구분된 별개의 시설임.
-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현장은 준주거지역 기준으로 인동거리 (0.8H)를 적용한 배치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보다 좁고 인접아파트로 인해 향 및 조망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204동 주변에 비오톱으로 인해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해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주거 및 비주거 차량동선은 데크 하부로 진입하여 지하1층 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지하2층과 지하3층은 주거전용 주차장임
- 단지 내 지상도로는 비상차량 동선임

## ■ ■ 마곡힐스테이트(킨등마을) ■ ■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 차이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에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본 주택은 준공이 완료된 단지로 가구, 가전, 마감수준, 부대복리시설, 조경 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 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돌출 및 실사용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 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의 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본 단지에 면한 인접대지의 레벨은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옹벽의 노출범위 및 형태가 달라질 수 있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에 따른 대지면적이 상이할 경우 정산처리 함.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공동주택(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공동주택(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아) 및 기타 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 등)은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균등하게 계산 배분됨.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건물외관 및 외부색채, 그래픽,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조경 등은 해당 관청과 협의(자문) 과정에 따라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친환경 주택으로 인증 예정임.
- 본 아파트 단지는 담장개방화 및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단지의 최대수요전력 제어 대상은 펌프동력에만 해당됨.
- 세대 욕실 층상배관 적용에 따라 일부세대의 발코니, 대피공간, 실외기실 천장고 및 창호 높이가 낮아질 수 있음.
- 각 동에서 세대로 공급되는 가스배관은 외벽에 노출 설치 됨.
- 하층 세대(필로티 상부세대 포함)에는 욕실 층상배관이 적용되지 않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샷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 사양이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발코니에는 선홍통 및 드레인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수전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는 일부 물청소를 위한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단지조경 및 세부식재 계획은 상세설계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다소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설치규모는 인허가 관청과의 협의 및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시설(휘트니스센터,보육시설,작은도서관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음.

- 주민공동시설 내·외부 디자인과 창호사양 및 규격은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D/A(설비환기구), 쓰레기 분리수거장, TOP LIGHT(천창), 상가,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 조경식재, 야간조명 및 경관조명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물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 비용 등)은 입주자 부담임.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포함) 및 단지내 비상차로에 인접한 일부 세대에는 차량 소음 및 불빛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층간소음저감설계를 적용하였으나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일조량이 동일평형의 다른 동에 비해 적을 수 있음.
- 수경시설, 포장, 주변환경,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본아파트의 내부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민사상 처벌을 받게 됨.
-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은 마곡지구 구역 외 위치하며, 인접한 마곡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은 사업주체(서울특별시 SH공사, 지자체, 국가기관 등)의 사정에 의해 개발계획 및 일정 등이 변경, 취소 및 지연될 수 있으며, “공급주체” 및 “시공자”는 이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 본 공동주택(아파트) 서측으로 김포공항이 위치하고 있어 항공기 소음 및 전파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북측 서남물재생센터 및 남서측 공항빛물펌프장에서 악취가 발생할 수 있음
- 마곡지구 내 계획된 학교는 지구계획 변경 및 해당 교육청 또는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마곡지구 내 주유소, 가스충전소, 주차장, 택시차고지, 전기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등 시설물이 계획되어 있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마곡지구 내 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 코레일공항철도 마곡역 역사 개통시기 관련 문의는 해당철도 운영기관인 서울9호선 운영(주) 및 코레일공항철도(주)에 하시기 바람.

## || 아크로리버파크 반포(신반포1차) ||

- 한강조망권은 올림픽도로변 방음림의 생육상태 및 계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등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 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단지와 외부도로 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주변현황 포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 단지 주변현황[인접 APT 단지, 주변상가, 학교(학교부지 포함), 공원(기부채납 공원 포함), 지하철역 등]에 의한 사항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음.
- 공동주택(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 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팸플릿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바람.
- 주변 단지의 신축, 단지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 도로소음·지하철 진동소음 등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D/A(설비 환기구), 쓰레기 분리수거장, TOP LIGHT(천창), 상가,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 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하여야 하며, 위치 및 개소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부대시설(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시 계단실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위치 및 사용상의 여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계약하여야 함.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소방용/이삿짐용 사다리차 진입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음.
- 단지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커뮤니티 시설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 예정임.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가칭)“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단지조경(녹지 및 수경시설 포함) 등의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 등은 현장 실시공시 팸플릿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음.

## ▣ 설계관련 주요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문주, 담장, 방음벽,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동출입구, 외부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및 기타「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서측에 위치한 공원(근린공원)은 도시계획시설(서울시, 서초구 도시계획)로서 기부채납 부지임.
- 부대복리시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 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 변경, 통합, 사용동선, 입면형태, 실내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20m 도시계획예정도로의 하부연결통로는 지하주차장 지하3층으로만 연결되며, 상부 연결데크(페스티벌 광장)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기부채납 부지임.
- 신설될 지하철도(20m 시도 지하)는 시도로서 사업시행자가 조성 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상귀속되는 지하철도임.
- 지하철도 하부 지하3층에 차량이 통행하는 연결통로(차도) 조성, 이용하는 것은 「도로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도로점용료와 시설물사용료 및 존치시까지의 유지관리 등은 사용검사 이후에는 입주민들이 매년 서초구청에 납부하고 사용하여야 함.
- 사업부지내 건축한계선 주변 공공용도[보도(폭2m), 자전거도로(폭1.5m), 횡단보도포함]로 제공되는 부분은 소유권 분쟁예방 및 도로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공공성이 확보되는 부지임.
- 외부색채, 입면(창호형태 등) 및 옥상구조물 등은 인허가 및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104동 3001호에 조성되는 스카이라운지, 102동 2105호에 조성되는 하늘도서관은 단지 주민 외 인근주민들에게도 개방되는 시설임.
- 단지내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센터, 연회장, 북카페, 방과후 아카데미) 및 자치구가 위탁하는 주민공동시설(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지하주차장 : 지하3층 공용주차 90대)은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며, 이용요금을 제외한 모든 사항을 입주민과 동일하게 적용함을 사전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이용신청 및 이용방법은 입주민의 이용절차와 동일하게 적용됨.
  - 작은 도서관과 피트니스센터는 회원제로 운영하여 입주민과 지역주민간 차별이 없도록 하며, 경로당은 입주민에게 우선권이 부여됨.
- 출입구, 경비실 및 문주위치는 대관 인·허가,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에 따라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음.
-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시설 인근 일부세대의 경우 조망권 등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내 비상 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음.
- 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대관 인·허가에 따라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비상차량 동선 등), 부대복리시설(어린이 놀이터, 주민휴게공간, 조경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입주자는 이의없이 동의하며, 시공자는 입주자에게 변경사항에 대해 추후 통보할 수 있음.
- 단지 외곽의 건축옹벽, 토목옹벽, 돌쌓기벽(조경석 쌓기 포함) 등은 그 위치 및 형태는 준공접수 인·허가 과정 또는 현장주변여건(도로현황, 레벨현황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공간 등은 실시공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기타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싱크대, 불박이장류(신발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져 있는 벽, 바닥, 천장의 최종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위세대 실별 가구(장롱, 불박이장 등) 설치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단위세대 실별가구의 실사이즈는 마감, 단열재 두께의 차이 등으로 도면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 지하주차장은 사업시행인가 변경 또는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음.
- 단지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 (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음. (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주차폭은 2.4m로 설계함)
- 공동주택(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소방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 보안/안전상의 문제로 경비실(이동식 또는 고정식)이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인·허가, 실시공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전후면 창호,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축벽, 동출입구,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형태 및 높이,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APT 축벽문양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세대 외벽 및 옥탑 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공용부 마감이 다소 매끄러운 고급타일 또는 바닥 화강석 물갈기 제품이 적용될 경우 미끄러짐에 주의해야 함.
- 발코니 확장시 새시창은 이중창호[AL+PL창]가 설치되며, 창호사양(유리종류, 하드웨어, 창틀, 크기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대피공간이 설치된 세대중 4층 이상의 대피공간 문은 철제방화문으로 시공되고 1~3층 세대는 별도 재질의 문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실시공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 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 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신발 걸림과 무관함.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실시공시 공동주택(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에는 청소용 수전,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되었음.
- 단위세대내 환기시스템은 본공사시 설치 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외기와 실내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 사용, 장시간 음식물 조리, 실내 빨래건조대 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발코니 중 세탁실 외벽에는 결로 방지를 위한 환기용 CAP(개폐기능)이 설치되며 동절기 관리 소홀로 인한 수도 동파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람.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시 구조체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선홍통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음.
- 인접 세대 및 동일 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벽체 일부가 돌출될 수 있음.
- 상부 세대 비확장 시, 하부 세대의 천장 부위에 추가 단열공사로 인해 우물천장 깊이, 등박스의 크기 등의 천장부분이 변경(위치 및 깊이 등)될 수 있음.
- 세대내 통합 분전반 설치 위치 및 선반의 배치는 좌우 세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내 부분적으로 천장 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 높이가 다를 수 있음.
- 세대내부 전기, 설비공사상 일부 노출배관의 시공이 불가피할 경우 실사용 면적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모집공고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계획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함.
- 대관 인허가시 동간거리로 인한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여 이에 따른 이익을 제기하실 수 없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음.
- 세대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아파트) 외부창호(발코니)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높이, 폭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공장생산 자재(예: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됨.
- 천연자재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함.
- 필로티에는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캐노피 설치부위 주변 세대에는 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 색채 등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개방형 발코니 난간대의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음.
- 다음 세대에는 비확장 발코니에 대피공간이 설치됨.  
(101동 1,2호 라인, 102동 1,2호 라인, 104동 3,4,6호 라인, 107동 1,2,4,5,6호 라인, 108동 1,2,3,4,5호 라인, 111동 5,7호 라인, 113동 1,2,3,4,5호 라인)
- 주동에 설치되는 공중정원(GARDEN)의 위치는 다음과 같음.(100동 18~19층 1호라인 / 11~12층 3호라인, 101동 4~5층 1호라인 / 13~14층 2호라인 / 19~20층 1호라인)
- 배치상 다음 세대 등은 기계·전기실, 빗물처리조, 환룸(제연 포함) 등의 급·배기구와 인접하여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계·전기실 : 104동 2,3,4,5호 라인, 빗물처리조 및 정화조 : 108동 2호 라인, 111동 1,4,5,7호 라인
  - 환룸 : 101동 2,5호라인, 102동 1,2,5호라인, 107동 2,6호 라인, 108동 1호 라인, 111동 5호 라인, 113동 1호 라인
  - 제연환룸 : 101동 1,5호 라인, 102동 1,5호 라인, 104동 6호 라인, 107동 1,3,5호 라인, 108동 3,4호 라인, 111동 4,6호 라인, 113동 1,5호 라인
- 배치상 다음 동의 하부에는 부대복리시설 등이 인접하여 있으니 사전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민운동시설 : 104동 1,2,3,4,5,6호 라인, 주민공동시설 : 100동 1호 라인, 103동 3호 라인, 104동 5호 라인, 105동 4호 라인 107동 3,4,5,6호 라인, 108동 1,2호 라인, 109동 3호 라인, 110동 4호 라인, 112동 3,4,5,6호 라인, 114동 3호 라인, 경로당 : 100동 3,4호 라인, 105동 1,2호 라인, 어린이집 : 100동 1,2호 라인, 104동 1,2호 라인, 106동 1,2,3,4호 라인, 티하우스(북라운지) : 102동 3호라인, 110동 1,2호 라인, 키즈카페 : 102동 2호라인, 스카이라운지 : 104동 1호 라인, 하늘도서관 : 102동 5호라인, 통합경비실 : 101동 1호 라인, 110동 4호 라인, 113동 2호 라인, 관리사무소 : 113동 2,3호 라인, 재활용/창고 : 100동 3,5호 라인, 101동 2호 라인, 102동 1호 라인, 103동 4호 라인, 104동 1호 라인, 106동 2호 라인, 108동 4호 라인, 109동 4호 라인, 110동 2호 라인, 111동 2호 라인, 112동 4호 라인, 113동 5호 라인, 114동 4호 라인)

## ■■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고덕시영) ■■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단지주변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 등),토지이용계획(학교예정부지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가 지연될 수 있음.
-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동에는 단지 내외간의 레벨차에 의하여 일부 세대의 전·후·측면에 경사면 처리 공법에 따라 옹벽, 석축, 자연 경사 처리 구간 등이 설치됨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로 인한 조망침해,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 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 시설, 문주, 담장, 방음벽,편의 시설물, 안내시설물, 동 출입구 및 캐노피, 필로티, 평입면계획, 차수판, 외부난간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및 기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관청과의심의, 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공동주택(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등이 침해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캐노피 설치부위 주변세대에는 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우·우수옥외배관은 최종검토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이 상품개선 및 기능, 구조, 성능 등을 위하여 평·입·단면, 창호재질, 설치기구 위치 및 개소 등이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을 원활하게 하며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관 인허가에 따라 단지내/외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비상차량 동선 등),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휴게공간, 조경공간, 커뮤니티시설 등)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입주자는 이의 없이 동의하며, 시공자는 입주자에게 변경사항에 대해 추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완충녹지, 단지 주출입구 도로 확폭 구간, 소공원 기부채납 구간),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건축옹벽, 토목옹벽, 돌쌓기벽(조경석 쌓기 포함)의 형태, 공법, 위치 등이 서로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기부채납 공원은 향후 외부보행자통행, 소음 등 환경권 침해될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차량출입구 및 보행자 출입구의 위치는 대관요청 및 주변단지의 민원 등으로 인하여 현위치에서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및 주거공용면적 합,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 즉 준공 시 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있음을 충분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 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 이송 및 집하시설 공사는 “시공자”가 시공하지 않는 공사로 하자 및 유지보수 등에 대한 책임사항은 “시공자”가 아닌 별도의 음식물 쓰레기이송 및 집하시설 공사업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 단지 북측의 고덕뒷길에 계획되어 있는 생태육교는 대관공사(서울시 및 강동구청에서 설계, 시공)로 “사업주체”와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부지내에 생태육교를 설치하기 위하여 일부대지가 점용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 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소방용/이삿짐용 사다리차 진입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웃세대의 거실 및 침실이 보일 수 있어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배치상 다음 세대 등은 기계, 전기실, 빗물처리조, 현룸(제연 포함) 등의 급·배기구와 인접하여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1동~115동 전면, 117동~119동 전면 후면, 121동 전면, 122동 전면, 201동~206동 전면, 202동 후면, 208동 전후면, 209동~211동 전면, 217동 후면, 301동~304동 후면, 306동 전면, 307동 후면)
- 배치상 다음 세대 등은 쓰레기 분리수거장과 인접하여 있으며, 쓰레기 분리수거장 및 친환경자원투입구(쓰레기 자동집하시설용 투입구로, 설치위치는 카탈로그 배치도참조)의 설치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01동 후면, 103동 후면, 105동 후면과 113동 전면 사이, 111동 전면, 111동 전면과 120동 전면 사이, 112동 측면, 116동과 117동 사이, 119동 전면, 121동~122동 전면, 124동 전면, 125동 후면, 202동 후면, 203동 측면, 205동 전면, 211동~213동 측면, 214동 전면~215동 후면, 216동 후면, 302동 전후면, 303동 측면, 304동과 305동 사이, 306동 전면과 307동 후면사이, 308동 후면)
- 부대시설[시니어센터(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게스트룸] 및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가 옥상 및 조경공간에 설치 될 수 있으며, 배치상 근접한 124동, 125동, 201동, 202동, 204동, 301~305동은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차량 주출입구에는 단독 캐노피 또는 차량출입구와 문주가 연결되는 캐노피가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저층부에 설치되는 라미남 타일 마감으로 우천시 빗물소음이 발생 될 수 있으며, 사다리 이삿짐차량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옥상에 설치되는 태양열 집열시설 기둥 및 장식구조물, 옥상녹화 화단 조성으로 옥상의 보행가능 면적이 줄어 들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 복리시설(커뮤니티, 경비실, 학습시설, 보육시설, 노인정/관리시설 등)은 입면(창호, 외벽, 지붕구조물, 옥상조경, 옥상구조포함)이 인허가도서와 달리 아파트 주동과 어울리고 보안 및 조망권 확보를 위해 실시공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창호 모양 및 크기, 외부마감의 변경(석재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지붕재료, 모양, 디자인, 크기, 높이 등]
- 부대복리시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 변경, 통합, 사용동선, 입면형태, 실내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설치 되어지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되어지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대지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대지지분을 APT단지와 공유하여 계획되어 있으며, 차량동선 및 지하주차장은 샘터길(15m)에서 별도로 진출입 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시 계단실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의 여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커뮤니티(피트니스, GX룸, 사우나, 실내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독서실, 게스트하우스, 스튜디오, 어린이집, 클럽하우스, 카페, 코인세탁실, 연회장, 주민공동시설 등) 및 부대복리시설 등은 사업주체(조합)와 본계약서에 따라 기기 및 집기류가 제공되며, 본계약에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기본 마감만 제공되고 기기 및 집기류는 제외됩니다.
- 단지조경(녹지, 수경시설, 옥상조경 포함) 등의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 등은 현장 실시공시 팸플릿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으며, 실외텃밭이 설치될 경우 조성되는 면적과 수량이 한정되어 주민자치 기준에 의거하여 배분 운영되며, 인근동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시큐리티 등 민원으로 설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지에는 수경시설(생태계류, 생태연못)이 설치되며, 관리 여하에 따라 녹조, 벌레,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1블럭, 2블럭, 3블럭이 도시계획도로에 의하여 분리되어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7의주택단지규정]에 따라 하나의 단지로 계획(1블럭과 2블럭, 1블럭과 3블럭에 공동구 및 차량출입구로 연결되어 있고, 법적 시설인 부대복리시설 등도 하나의 단지로 계획 됨) 되어 있어, 입주 후 하나의 단지로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하며, 각 블럭별 부대복리시설 등은 전체 입주자가 공유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RC에서 RC+PC 복합화 구조로 변경됩니다.
- 차량 주출입구에는 단독 캐노피 또는 차량출입구와 문주가 연결되는 캐노피가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출입구, 경비실 및 문주위치는 대관 인허가,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에 따라 이동하여 설치 할 수 있습니다.
-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시설 인근 일부세대의 경우 조망권 등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대관 인허가 시 동간거리로 인한 일조 및 조망이 간섭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며, 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골조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타일나누기,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주변현황포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이후 단지 내(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 시설, 지하 기전시설(쓰레기 자동집하장 포함), 지상 돌출물, 지상 쓰레기관련시설 등) 및 단지 주변현황[인접APT 단지, 인접주택단지(상가주택 포함), 주변상가, 공공청사(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등), 종교시설(교회 등), 학교(학교부지 포함), 공원(기부채납공원 포함), 지하철역 등]에 의한 사항은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으며, 분양 후 단지 주변의 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인한 주변시설(도시계획 시설 포함)의 변경이 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어린이집, 경로당, 게스트하우스 인근동은 일조권 · 조망권 · 환경권 · 소음피해 ·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코아) 및 기타 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등)은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되었습니다.
- 에어컨 냉매배관은 거실 및 안방에 설치됩니다.
- 발코니/실외기실로 통과되는 설비배관 등으로 침실 및 안방의 커튼박스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개인적인 인테리어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새시는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 사양과 창문개폐 위치는 실 시공시인허가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 부분이 난간턱 높이와 수벽의 높이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릴창호의 재질 및 사양, 디자인(모양 및 개폐방법 포함)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 등으로 창호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단열재로 인해 안목치수가 줄어들거나 돌출되는 마감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실외기실 그릴창을 개방하였을 경우 실외기실 도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및 발코니에 설치되는 피난사다리로 실사용 공간이 줄어들 수 있으며, 완강기 설치로 실외기실 문 위치 및 벽체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확장발코니의 외부새시는 이중창호로 설치되며, 창호사양(유리종류, 하드웨어, 창틀,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창호사양은 부위별, 설치 여건별로 일반창호와 시스템창호로 구분되어 설치됩니다.
- 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을 원활하게 하며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올림픽파크 한양수자인(성내미주) ■

### ▣ 단지 내부 여건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간거리 및 세대간 창호 위치에 따라 조망권 및 환경권이 세대간에 상이할 수 있으며, 세대 상호간의 창호 위치에 따라 사생활 보호가 불리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공급받을 주택이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의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람.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 지붕은 평지붕임.
- 104동에 인접하여, 지하층에는 정화조가 설치되어 인접한 일부 세대에는 소음, 냄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104동 코어에 붙어 정화조 배기구가 설치 예정임.
- 단지내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및 단지 내 비상차로의 인접한 세대는 차량소음 및 불빛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에 침해될 수 있음.(특히 101동과 103동의 인접 저층세대는 출차주의등에 의한 경광등 불빛, 작동음, 진·출입하는 자동차 전조등, 주차장의 캐노피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아파트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 및 피트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 세대/디자인

-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아파트 저층부, 외부 입면디자인과 마감재 변경 및 기타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계획 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협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음.
- 아파트 로고의 위치 및 디자인은 향후 수립될 예정이며,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음.

## ▣ 세대/환경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탑승위치 등) 등은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에 준함.
-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필로티, 지상대피소, 환기창, 채광창, D/A 등의 주변세대는 소음 등에 의해 사생활권의 침해 받을 수 있음.
- 기계, 전기실 급배기구 : 105동 북측 및 서측에 인접하여 설치
- 지하 주차장 환기용 급, 배기구 설치위치 : 101동 3,4호 라인 전면, 102동 4,5호 라인 전면, 103동 동측면, 104동 3,4호라인 코어 접합면, 105동 1호라인 측벽
- 제연DA는 각 주동 피로티 내부또는 코어와 인접하여 설치
- 지하 채광 및 환기를 위한 TOP-LIGHT는 단지 주동과 중앙 광장 인접하여 설치
- 어린이놀이터 설치위치 : 단지 중앙광장에 2개소 설치됨
- 보육시설 및 경로당 설치위치 : 부출입구와 105동 서측에 인접하여 설치
- 공용계단실(주민공동시설 지하 층 접근 동선) : 102동 4호라인 피로티 내부
- 각종 DA, TOP-LIGHT등은 실시공 과정 중 개수, 위치,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생활폐기물 보관소(쓰레기분리수거장)는 각 동 주변에 설치되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단지 내 생활폐기물 보관소(쓰레기분리수거장)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설치 위치, 규모 등은 현장 상황에 따라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관리사무소 및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할 경우, 시설이용 시 이로 인한 인근세대의 소음 등의 환경권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환기창, 채광창, D/A, 관리사무소 및 경로당, 커뮤니티시설 및 어린이집, 경비실, 지상대피소,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전기 배기구 인근세대는 발전기 매연에 의해 연기가 유입될 수 있음.  
(\* 발전기실 설치위치 : 105동과 주민공동시설에 인접한 지하층에 설치)
- 저수조 및 펌프실은 104,105동 하부에 설치되며, 이로 인해 저층세대는 일부 진동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주출입구, 부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소음,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단지내 시설의 위치에 따라 일부 동 및 세대에서는 이용상 제한 또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니,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셔야 하며, 추후 설치 위치 및 시설면적 변경요구 등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에 인접한 저층 세대는 조망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출입구 설치위치 : 101,103동에 인접한 2개소  
\*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인접한 101동 3,4호라인/103동 저층부는 소음 및 조망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주출입구의 문주의 형태는 시공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필로티 및 지상대피소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및 지상대피소 옆, 상·하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과 필로티에 설치된 자전거보관대 등의 시설 이용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및 지상대피소 위층의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각 동의 일부 세대 전후면 녹지 내 대형수목 식재로 인해 일부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세대내 가스배관 일부는 노출배관으로 시공되며, 주방상판에는 가스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됨.
- 욕실,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F.D는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 세대/규격

-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당 현장은 서울시 건축심의 입면 특화계획에 따라 각 평형별로 2~3가지 형태의 타입이 있으며, 타입별로 창호형태(높이, 폭등) + 서비스면적 + 발코니 형태 등이 상이하므로 분양전 반드시 확인바람.
- 59형의 103동,105동의 1호라인 침실1 창호의 폭은 1700mm로 시공됨 (다른타입의 폭은 2100mm임)
- 59형의 발코니2(보조주방)의 천장고는 전열교환기 등의 설비장비 설치로 인해 다른평형에 비해 천장고가 낮습니다.
- 59타입 발코니 2(보조주방)에는 실외기실이 겸용으로 사용되며, 이로 인해 사용상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세대/마감재

-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1항 3호 가목”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평균 1.5미터를 초과하는 발코니 면적은 “공동주택의 발코니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2006.1.23.건설교통부)”에 의거하여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입하였음.
- 단위세대 내 대피공간의 면적은 벽체 중심선 기준과 발코니 면적 산정기준으로 산정하였음.
- 세대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외부 창호(레바 포함)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양(유리, 창틀)이 동급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창호 및 문 열림 방향, 날개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실외기실 도어 개폐방향 변경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하실 수 없음.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하시기 바람.
- 세대 내부 가구(붙박이장, 주방가구 등)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천장, 벽체, 바닥)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장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 욕조 바닥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 고정형(붙박이) 가구 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 하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공용욕실에는 욕조가 설치될 예정으로 추후 위치 이동은 불가.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새시, 단열재의 추가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각 세대의 대피공간은 별도 구획되며, 대피공간은 화재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들의 냉방 실외기 설치할 경우, 인근 세대의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저층세대의 외벽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가 변경될 수 있음.
-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 급수급탕 계량기, 가스계량기 등은 상황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복도 및 세대 전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수 있음.
- 세대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또한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실시공 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 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내 대피공간에 임의 시설물, 장비, 가구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구조 변경 등이 불가함.

## ▣ 외부환경 디자인

- 홍보물 상의 조감도와 배치도의 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시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및 형태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내 조경, 동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음. • 외부 시설물의 위치, 색채, 재질, 디자인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보행출입구, 차량 진출입로는 기존 도로의 선형 경사도에 따라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저층부 외벽마감은 석재 또는 뿔칠계열, 수성페인트로 시공되며, 상부층은 수성페인트, 피로티 내부는 수성페인트로 시공됩니다.
- 단지내 일부 도로는 보·차도 혼합 블록으로 설치되어 차량이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외부 저층부 마감은 당사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시공함.
- 102동과 103동에 인접한 주출입구 경비실에는 통합문주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이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102동에 인접하여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및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특히 지하에 설치되는 커뮤니티시설(히트니스, 골프장등) 시설 운영시 소음 등의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대지인접도로(통행차량, 보행자 소음등) 및 통로, 보행계단등으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고층세대의 경우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지상도로와 거리가 떨어진 일부세대의 경우도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함
- 101동 및 103동 세대 전 후면에 지하주차장 차로 지붕이 설치 되므로 소음 및 조망 등의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외부에는 별도의 헨스가 설치되지 않아 일부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 공간의 일부는 지하, 일부는 지상에 노출되어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공간의 크기, 위치, 단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입주 후 입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의한 사용상 불편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잔여공가 공급세대 입주자 유의사항 ||

**잔여공가 입주자 유의사항은 중요사항만을 요약하여 안내하였사오니 입주자께서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여건 등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에 게재한 전자팸플릿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작된 것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매입형 장기전세주택의 경우에는 조합분양주택과 비교하여 일부시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강일지구(강일리버파크) 인근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구 내에 강동권역 공영차고지가 위치하여 이로 인한 불편이 예상됨.
- 강일리버파크 인근에 고덕·강일보금자리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보금자리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 등의 생활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내곡지구 남서측으로 경부고속도로가 연접하고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내곡지구 남동측 약1km거리(1단지 기준)에 강남,서초/강동,송파예비군훈련장에 소속된 사격연습장이 위치하고 있어 예비군 사격훈련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내곡지구 중앙 경관녹지 내에 5단지와 인접하여 묘지가 위치하고 있음.
- 내곡지구 서측으로 약 1km거리에 원지동 서울추모공원 화장시설이 있음.
- 내곡지구 동측으로 약 4km거리에 서울공항이 위치하고 있어 항공기 소음 및 전파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
- 내곡지구 남측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 주변으로 등산객을 위한 음식점, 등산용품 판매점 등이 위치하고 있음.
- 등촌동 장기전세주택 남측으로 공항로가 연접하고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등촌동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입면특화 등으로 일반공동주택과는 달리 각 세대별로 창호의 모양, 크기 및 시스템이 다르므로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용상, 기능상 불편함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등촌동 장기전세주택은 철근콘크리트 라멘조구조로, 내부에 기둥이 돌출되어 있으며, 측벽세대는 단위세대 평면이 다소 상이함.
- 등촌동 장기전세주택은 복도식 공동주택으로 일부 복도는 중복도 구간이 있으며, 서로 마주보는 세대가 있어 사생활 침해 및 환기 문제 등이 계단실형, 편복도식 공동주택에 비해 불리함.
- 등촌동 661-6, 마곡지구 서측으로 약 2km 거리에 김포공항이 위치하고 있어 항공기 소음 및 전파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
- 마곡지구 내 계획된 학교는 지구계획 변경 및 해당 교육청 또는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마곡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지구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마곡지구 내 기반시설은 향후 심의 및 인허가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발산지구(마곡수명산파크) 인접지역에 김포공항이 위치하고 있어 항공기의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 및 전파장애 등이 있을 수 있고, 마곡수명산파크 서측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위치하고 있어 악취 및 야간 불빛 등으로 인한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오수중계펌프장이 위치하고 있어 악취가 발생할 수 있음.

- 상계장암지구 인근에 외곽순환고속도로, 동부간선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세곡리엔파크 인근에 서울공항 및 공군비행장이 위치하여 항공기 소음이 심하며 비행기 에어쇼기간에는 상당히 심하게 소음이 발생함. 또한 단지 상공으로 항공기 운항이 주기적으로 실시되며, 항공기 운항고도에 따라 실내소음도가 45dB을 초과할 수 있음.
- 세곡2지구 동측에 인접한 KTX 철도 지하화 공사로 인해 입주 후 소음, 분진,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세곡2지구 동남측에 서울공항 및 공군 제15훈련비행단이 위치하여 항공기 소음이 심하게 발생하는 지역(특히, 에어쇼 연습기간 및 에어쇼 기간에는 상당히 심한 소음 발생)으로서 청약 전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세곡2지구 단지 상공으로 항공기 운항이 주기적 또는 비주기적으로 실시되며 항공기 종류 및 운항 고도에 따라 실내소음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음.
- 세곡2지구는 건물옥상에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구조물 및 공작물 (광고탑, 애드벌룬, 통신안테나 등)의 설치를 금지함.
- 세곡2지구는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식이 방해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등화의 설치를 금지함(옥탑 등 야간 조명시설 제한함).
- 세곡2지구는 항공기 운항의 방해가 되는 연막, 증기발산, 색채유리, 기타 반사물체의 진열 및 설치를 금지함.
- 세곡2지구는 항공기 운항 시 TV수신 감청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일부 동 옥상에 설치되는 TV 및 위성 수신용 안테나가 고도 제한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세곡2지구는 항공기 운항 시 통신전자장비에 대해 전파 영향을 미치는 장비/시설(고출력장비, 고전압 전파방해 등)의 설치를 금지함.
- 세곡2지구3,4단지 입구 주변 지하철 3호선과 남측지구 4단지 북동측으로 지하철 분당선이 지하로 통과하고 있어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탄천물재생센터가 세곡2지구3,4단지 북측 약 1.2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구(남측지구) 남동측 약 0.8km 거리에 성남하수처리장이 위치하고 있음.
- 세곡2지구3,4단지 북동측으로 약 0.6km 거리에 소각시설과 북측 약 0.9km 거리에 강남자원회수시설이 위치하고 있음.
- 세곡2지구3,4단지 남측에 인접하여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및 동측 약 0.3km 거리에 송파구 청소작업기지가 위치하고 있음.
- 세곡2지구3,4단지 남측에 인접하여 강남자동차매매시장이 위치하고 있음.
- 세곡2지구3,4단지 남측으로 약 1km 거리에 서울공항이 위치하고 있어 항공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 및 전파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
- 세곡2지구3,4단지 북측에 인접하여 수서차량기지가 위치하고 있음.
- 세곡2지구 6,8단지는 주변이 구릉지로서 단지 바깥의 등산로 등을 통해 단지 내부를 볼 수 있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향후 개통예정인 KTX(수도권 고속철도)가 세곡2지구 3단지와 4단지 사이를 지하로 통과하여 건설될 예정으로 철도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세곡2지구 6,8단지는 동, 서, 남측으로 야산이 단지를 둘러싸 일조 등이 불리할 수 있으며, 분묘가 산자락에 다수 있음.

- 송파파크데일 남서측에 서울공항 등이 위치하여 항공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수서동 장기전세주택 동쪽으로 수서~분당간 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어 교통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수서동 장기전세주택 단지 북쪽으로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센터)이 대지경계에 인접해 있어 일부 세대의 경우 실내 투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수서동 장기전세주택 단지 서쪽으로 탄천공원 산책로가 있음.
- 수서동 장기전세주택 인근에 지하철 3호선 지하구조물(수서역~수서차량기지간 입출고선 구조물)이 인접해 있어 차량 입출고 운행 시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신내3지구 1단지와 2단지 사이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따른 방재시설인 우수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우수량에 따라 우수지내 수위가 변동될 수 있음.
- 신내3지구 2단지 남측에 북부간선도로 및 1단지 서측에 신경춘선이 인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신내3지구 2단지 동측에 구리·포천간 고속화도로 및 IC(인터체인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향후 개통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신내대시앙 북측에 북부간선도로 및 지하철 6호선(지상구간) 노선이 인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신내대시앙 북동측에 LPG충전소가 위치해 있음.
- 신정이펜하우스 인근에 김포공항이 위치하여 항공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정이펜하우스 2단지 서측에 열병합 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임. 또한 지구 남동측에 양천권역공영차고지 및 서부화물트럭터미널이 위치하여 이로 인한 교통, 소음 등의 생활 불편이 예상됨.
-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 내에는 버스차고지, 택시차고지, 폐기물처리시설, 열공급시설, 자원회수시설 등 설치계획이 있으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람.
-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 내, 창릉천변 및 인접 공원용지에 기존의 군 방호벽, 군진지, 군 막사 등의 기능 대체시설로 설치되는 군사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에 인접한 기존의 군부대 및 군 관련시설(훈련장, 사격장 등)에서 군사훈련, 작전 및 시설유지를 위하여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 제반 환경 및 기타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장지지구(송파파인타운) 인근에 서울공항이 위치하여 항공기 이착륙 및 방향전환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외곽순환고속도로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장지지구(송파파인타운) 인근에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천왕2지구 주변으로 농경지, 공장 및 주거지역이 위치하며 남측으로 지하철 차량기지가 위치하여 있음.
- 천왕이펜하우스 인근에 구치소, 교도소 등 영등포교정대체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인근에 천왕차량기지가 위치하여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함
- 서초교대이편한세상 104동~106동의 1층 및 2층, 중층부 일부세대는 외부 지형의 높·낮이 또는 외부건축물로 인해 소음이나 조망, 일조권 등이 저해될 수 있으며, 106동 일부세대는 전망용 엘리베이터에 의해 소음이나 조망 등이 저해될 수 있음.

2016. 4. 29.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사장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SH공사 홈페이지 [www.i-sh.co.kr](http://www.i-sh.co.kr)

**콜센터 1600-3456**